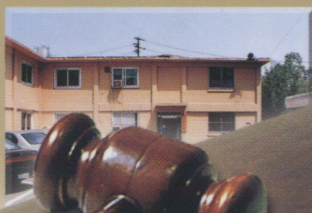


고등군사법원 연감

(2000. 7. 1 ~ 2002. 12. 31)



고 등 군 사 법 원

고등군사법원 연감

(2000. 7. 1 ~ 2002. 12. 31)



고 등 군 사 법 원



고등군사법원 부대기



고등군사법원 청사전경



고등군사법원장 근영

발 간 사

우리는 우리의 선조나 선배 또는 우리 스스로가 이때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 보며 잘한 일은 이를 더욱 신장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반성하고 깨우쳐서 또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 군사법원은 해방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 86호에 의하여 제정된 조선경비대법(1946)과 국방경비법(1948) 등에 의하여 미국의 군법회의 제도를 계수하여 존치하던중 1954년 헌법개정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7년 헌법 개정시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및 육·해·공군본부에 설치운영되었으나, 1994년 군사법원법 개정시 국방부로 통합되어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에 편성·운영 되던중 2000년 6월 27일 군사법원의 조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 16,861호)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이 군사법원연감은 위와 같은 군법회의 시대와 군사법운영지원단 시대를 지나 새로운 고등군사법원 시대를 열게 된 2000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고등군사법원의 행정조직·운영 및 각종 사건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한 것 입니다.

이번 고등군사법원 연감이 나오기까지 자료수집, 발간 등에 수고를 해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연감이 군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장병의 인권보장과 엄정한군기강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국민과 군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7월 일

고등군사법원장 육군대령 박 주 범

CONTENTS

▣ 역대 지휘관 사진	6
▣ 고등군사법원 발자취 및 부대주요행사	8
▣ 고등군사법원 연혁	27
▣ 고등군사법원 약사	29
▣ 부대 설치령/변천사	39
▣ 고등군사법원 편성/보직현황	50
○ 편성기구도	
○ 편제직위/보직현황	
▣ 고등군사법원 임무/기능	55
○ 고등군사법원 임무/기능	
○ 각 부서의 임무/기능	
▣ 주요업무 현황	59
○ 고등군사법원 중장기 계획	
○ 고등군사법원 사건처리 현황	
○ 주요사건 판결문	
▣ 참고사항	229
○ 군판사 윤리 강령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서기전형에 관한 규칙	
○ 외국의 군사법원/ 군사법원의 존립 목적	
○ 군사법 제도 개선안	

역대지휘관 사진

군사법원 ('90. 5. 1 ~ '94. 1. 31)



陸軍少將 全昌烈 ('90. 5. 1 ~ '91. 4. 30)

초대 군사법원장



陸軍大領 劉弘武 ('91. 4. 1 ~ '92. 10. 31)

2대 군사법원장



空軍大領 姜二壽 ('93. 1. 12 ~ '94. 1. 31)

3대 군사법원장

군사법운영지원단 ('94. 9. 24 ~ '97. 4. 13)



海軍大領 文正式 ('94. 9. 24 ~ '95. 2. 10)

초대 군사법운영지원단장



空軍大領 李熙碩 ('95. 2. 10 ~ '96. 1. 31)

2대 군사법운영단장



空軍大領 鄭鶴鎭 ('96. 1. 31 ~ '96. 12. 16)

3대 군사법운영단장

국방부법무운영단 ('97. 4. 14 ~ '00. 6. 30)



陸軍大領 金蒼海 ('97. 6. 19 ~ '98. 1. 7)

4대 법무운영단장



陸軍大領 朴鍾哲 ('98. 1. 8 ~ '99. 11. 19)

5대 법무운영단장



陸軍大領(進) 金蒼海 ('99. 11. 20 ~ '00. 4. 1)

6대 법무운영단장

고등군사법원 ('00. 7. 1 ~)



陸軍大領 李星載 ('00. 4. 1 ~ '01. 12. 17)

초대 고등군사법원장



陸軍大領 박주범 ('01. 12. 17 ~ '03. 6. 현재)

2대 고등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발자취



군법회의 당시의 건물
◀ ('74. 7. ~ '94. 7. 20)

군사법운영지원단
('94. 9. 24 ~ '97. 4. 13)
법무운영단
('94. 4. 13 ~ '00. 6. 30) ▶



국방부 법무운영단 현판식
('97. 4. 23) ▶





고등군사법원신청사전경

▲ ('01. 10. 19 ~ '03. 6. 현재)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전경 ▶



◀ 고등군사법원 소법정 전경

고등군사법원 창설 기념식

('00. 7. 1 육군회관) ▶



고등군사법원 창설 기념식

◀ ('00. 7. 1)





고등군사법원 부대기 이양

박용옥 차관님으로부터 부대기 이양을
받는 이성재 초대 법원장

◀ ('00. 7. 1)



**박용옥 차관님 고등군사법원
청사기공식 참석**

▶ ('00. 7. 8)



고등군사법원 청사신축 기공식

◀ ('00. 7. 8)

차관님 초도방문 업무보고

참석자 : 차관 권영호, 기획관리
실장 유보선, 법무관리관 김진섭,
법원장 이성재
('00. 7. 19) ▶



차관님 업무보고 후 환담

('00. 7. 19) ▶



차관님 법원방문 기념촬영

◀ ('00. 7. 19)

전군 군판사 회의 개최

고등군사법원은 12. 18. 육군회관에서 법무관리관과 고등군사법원장 및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및 전군 군판사를 대상으로 전군 군판사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판사들은 전 군의 양형 현황 분석 및 군판사 직업윤리 확립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군에 있어서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와 군사법원의 신뢰성 증진 방안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박시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의 “양형의 이론과 실제”와 서울대 정종섭 교수의 “국가개혁의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주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전군 군판사 회의

◀ ('00. 12. 18)

창설 제1주년 기념
전군 군판사 회의
('01. 6. 28 육군회관) ▶



창설 제 2주년 기념
전군 군판사 회의 / 세미나

◀ (2002년 7월 5일 육군회관)



부대 창설 제 1주년 기념다과회
('01. 6. 30)





신청사 준공식

참석자 : 차관 권영호, 국회법사위원 김용균, 기획관리실장 유보선, 조달본부장 성유경 ('01. 10. 23)



신청사 준공 테이프절단식

참석자 : 차관 권영호, 국회법사위원 김용균, 기획관리실장 유보선, 초대군사법원장 전창열, 법무관리관 김진섭, 계획예산관 박종기, 군무지원단장, 조달본부장, 육군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 검찰단장, 유진건설사장, 보성전기사장 ('01. 10. 23)



군 법무관(법무 15기) 시보 고등군사법원 방문기념 (2002년 1월 4일)



美8군 군사법원 방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대령 박주범)소속의 군 판사들은 '02. 6. 24. 미8군 군사법원을 방문해 상호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미8군 순회 군사법원 군 판사인 게리 스미스 대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군 판사들은 방문에서 미군 군사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재판을 방청하고 미군 법무관들과 함께 미군의 군사법 시스템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스미스 군 판사는 박주범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명예 군 판사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러한 행사가 향후 양국간 군사법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양국 군 판사들은 상호 방문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유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

이임 : 대령 이성재 / 취임 : 대령 박주범
('01. 12. 17)



고등군사법원 부대기 이양

권영호 차관님으로부터 부대기
이양을 받는 박주범 2대 법원장
('01. 12. 17)



이준 장관님 법원 순시 기념 수행: 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관, 장관보좌관 영접: 법무관리관, 고등군사법원장, 검찰단장
(2002년 9월 18일)



업무보고 후 장관님과의 환담 모습 고등군사법원장실 (2002년 9월 18일)

창단 1주년 기념행사 ('95. 9. 21)

軍內 최고사법기관 정착

국방부 사법운영지원단 창단1주년 기념 행사



근무유공 직원 표창장 수여

근무유공 “표창수여”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창단1주년 기념식에서 단장이 근무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법 운영지원단(단장 이희석 대령)은 21일 창단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단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훈시를 통해 지난 1년간 많은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명실상부한 군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사법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해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으로 전군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단장은 이어 『우리단은 군의 엄정한 기강유지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기관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을 가진 군사법 운영지원단은 지난해 9월 24일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창단된 후 명실공히 군내 최고사법기관으로 적법절차를 통한 장병인 권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기여해 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근무유공자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단장표창수여식이 있었다.

◆국방부장관 표창 = ▲이동진 육군소령(고등군판사) ▲김영성(수사군무주사보)

◆군사법운영지원단장 표창 = ▲박종배(수사군무주사) ▲정윤석(수사군무서기)

▲정원택 해군중사 ▲박수동 육군중사

【김봉석 기자】

業務·行政 모범 합리적 운영
將兵 인권·지휘권 확립 큰 기여

군 법무운영단 현판식 새출범

국방부 송무부 신설 3부1처 체제 갖춰

국방부 법무운영단은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민재 육군소장을 비롯한 법무 관계관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기존의 국방부 군사법 운영지원단의 명칭이 지난 14일 대통령령에 의해 국방부 법무운영단으로 바뀌어짐으로써 이뤄졌다.

명칭 변경과 함께 그동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맡아오던 민사 및 행정소송업무를 함께 맡게된 법무운영단은 이 업무를 담당할 송무부를 새로이 신설, 기존의 심판부, 검찰부, 사무처와 함께 3부1처의 운영체제를 갖췄다.

송무부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운영단은 다기능 운영체제를 갖추으로써 업무의 기능이 확대돼 명실상부한 군내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한편 이날 법무관리관 이민재소장을 현판식에서 『국방부 법무운영단이 군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각자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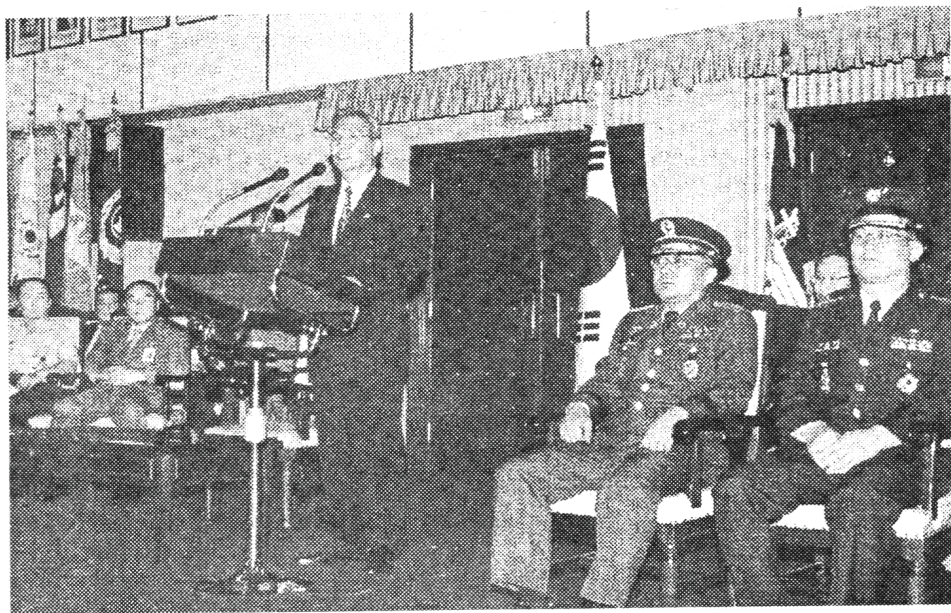
【박영민 기자】

◆국방부 법무운영단 현판식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민재육군소장(왼쪽)을 비롯해 법무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치됐다. 【사진=박성규 기자】



장병 인권보장·軍紀綱 확립

고등군사법원·국방부 검찰단 창설식



1일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창설식에서 박용욱 국방부차관이 훈시하고 있다. (사진=정의춘 기자)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이 새로 창설됐다.

국방부는 1일 박용욱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검찰과 법원의 주요 인사와 역대 법무판리관 등 많은 내외관빈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의실에서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창설식에서 이성계 대령과 서영록 대령은 각각 초대 고등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취임, 박차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첫 업무에 들어갔다.

박차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을 국방부 법무운영단으로부터 분리해 창설하는 것은 재판과 검찰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물론 각 조직의 기능에 부여된 고유한 임무를 더욱 전문화·활성화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이어 "고등군사법원은 군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법기관으로서 장병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군 기강을 확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 설

치되는 국방부 검찰단도 엄정하고 치밀한 수사로 군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유지하고, 군내·외에 수사 미진이나 편파수사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법 운영상 재판기관과 검찰기관과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판과 검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가 그동안 창설을 추진, 이날부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호영 기자)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검찰단 창설

국방부 법무운영단 해체 · 분리, 재판 · 검찰업무 독립성보장
국선번호부 및 병역비리 등 특수사건 전담수사부도 설치



국방부는 지난 1일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검찰단 창설식을 가졌다.

위해 국선번호부를 신설했다.
국방부검찰단(단장 서영득 대령)은 병역비리, 무기도입비리, 진급심사관련 비리 등 각종 구조적, 조직적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원을 추가, 특수사건 전담수사부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사기획업무를 위해 기획항소과를, 군사법 종사자에 대한 내부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등검찰과를 신설함으로써 군내 최고 검찰부로서의 권위에 맞는 내실을 갖추었다.

〈송영신 기자〉



〈이성재 고등군사법원장〉



〈서영득 국방부검찰단장〉

고 등 군
사 법 원 과
국 방 부 검
찰 단 이 창
설됐다.

국 방 부
는 지난 1
일 검찰 및
심 판 일 무
를 담당하
여 왔던 국
방 부 법 무
운 영 단 을
해 체 하 여
고 등 군 사
법 원 과 국
방 부 검 찰

단으로 분리, 창설식을 가졌다.

이번 개편은 재판과 검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함은 물론 각 조직의 기능에 부여된 고유한 임무를 더욱 전문화 ·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이성재 대령)은 명실공히 군내 사실심의 최고법원으로서 통일적인 양형기준과 치밀한 법논리를 제시하고 보통군사법원 사실심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판례분석등을 포함, 군사법 제분야의 연구와 군사법업무 종사자의 교육을 위해 재판연구부를 신설하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를 한 차원 높이기

법조광장



李星載 고등군사법원장
(육군법무관 대령)

지난 7월 1일부터 국방부 장관 직속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창설하고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신축 청사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군사법 분야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는 바, 이를 계기로 모든 군사법요원들은 국민과 군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기 위하여 맡은 바 책무와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군사법원은 헌법상의 특별법원으로서, 지휘권 보장 및 기강 확립 등 군의 특수성을 재판을 통해 구현하는 사명을 띠고 군법회의 시절을 거치면서 찬란한 국군의 역사와 함께 1988년에 군사법원으로 개칭되고 조직의 통폐합 등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어언 50년의 빛나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군사법원은 주로 군에 입대한 20대 초반의 꽃다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을 관장하고 있다. 이 젊은 청춘의 시기에 군에 입대하여 적지 않은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면서 사서히 군인으로 변모하는 모습은 정말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 훈련으로 꼭 짜인 부대 일과는 자신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없이 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도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때로는 방황하며, 국가와 사회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군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부대 화하기 위해서는 군의 기강을 지

해하는 각종 순정군사범죄 또는 죄질이 불량한 불순정군사법들을 엄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들이 아직 장래가 장황한 젊은이들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

軍 사법정의 실현 앞장

하기 위해 입대한 것을 감안하면, 엄벌과 관용 사이에서 군판사들은 조심조심하며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비극한 예로 구타등 가혹행위로 인한 상해, 사망사고는 부대 사기의 저하, 지휘관에 대한 불신 등 살로 군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영내 폭행에 대해 다소 엄한 입장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가족 등은 일반법원과 비교하여 중한 재판결과에 낙망하고 자식을 군에 보낸 것에 대하여 한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고등군사법원을 육해공군의 86개 보충군사법원의 상급심으로서 또한 군내 최고 법원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면서, 극선변호부를 설치하고 기존의 업무를 확대, 강화한 것은 장병들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다. 적법만이 능사가 아니며 혹시 간과할 수도 있는 양형 사유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법률의 문외한인 장병들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군내에서의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군사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군법무관 20년차의 최고심 재판장과 10년차 중견 군판사들을 고등군사법원에 보직시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연구부를 신설하여 3인의 재판연구관으

고등군사법원 출범에 즈음하여

로 하여금 각종 판례 연구 및 조사항목에 임하게 한 것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참여서기의 능력 제고와 사법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행정직과 재판사무과 등을 신설하였다.

창군 반세기 동안 한 차원 높은 군사법제도의 정립을 위해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를 토대로 군내 사법정의의 실현, 기본적인 인권의 신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고등군사법원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군판사윤리강령에 의한 행동준칙과 고도의 윤리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신진 군사법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민과 군의 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52주년 제헌절을 보내며 굳게 다짐해 본다.

고등군사법원, 全軍 군판사 회의

윤리강령 적극 실천 결의

고등군사법원(원장 이성재 육군대령)은 최근 육군회관에서 육·해·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와 각군의 군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고등군사법원 창설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주요 판결사례가 발표된 후 ▲판결문 양식의 법적 검토 ▲종교상 이유에 의한 항병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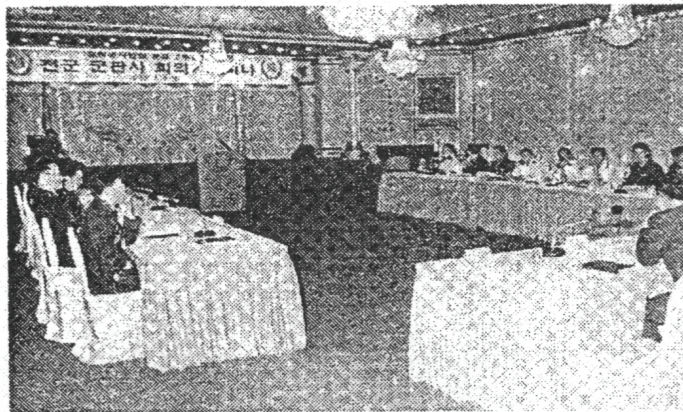
군판사들은 특히 새로운 판결문 양식 도입과 항병자의 양형문제 및 합리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집중토의를 벌인 뒤 군판사윤리강령의 적극 실천을 결의했다.

이 회의 후에는 미군 6순회법원 수석군판사인 켈빈 루이스 대령이 '군내 성적 군기문란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 국방부 법무운영단장인 박종철 변호사의 '21세기를 지향하는 군판사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의 초빙강연이 있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와함께 근무유공자 시상식을 거행, 오순희 육군중사에게 국방부장관 표창을, 이도선 군무원(8급) 등 3명에게 고등군사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호영 기자〉 fighter@dapis.go.kr

법률신문 ('02. 7. 15)



지난 5일 고등군사법원 주최로 열린 전군 군판사 회의 및 세미나

군사법원 재판권 문제 등 토의

고등군사법원 전군 군판사 회의 및 세미나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주범 육군대령)은 5일 육군회관에서 육·해·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와 각 군의 군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군 군판사 회의 및 세미나를 열었다.

고등군사법원 창설 2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각 군 및 국방부의 주요 판결사례 발표가 있은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 문제, 군무이탈사범 수사에 있어서의 장병 인권보장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이날 군판사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군기강 확립과 장병의 인권보장이라는 군사법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회의후에는 崔容碩 변호사(오세오닷컴의 대표)의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법조인의 변신', 卞東杰 서울지법파산부 수석 부장판사의 '도산사건 처리실무'라는 초빙강연도 실시됐다.

고등군사법원 연혁

연혁	일자	근거	내용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부여	'54. 11. 29	2차 헌법 개정	군법회의 제도 도입
군법회의법 제정	'62. 1. 20	법률제1,004호	국방부 군법회의 설치
군법회의법 개정	'87. 12. 4	법률제3,993호	군사법원으로 전면개정 (법원의 성격 강조)
군사법원법 개정	'94. 1. 5	법률제4,704호	국방부 및 각군의 고등군 사법원통합(국방부에설치)
청사 이전	'94. 7. 20	대통령령제14,385호	군사법운영지원단 창설에 따른 청사 이전 (합참 제 5별관)
군사법운영지원단령 제정	'94. 9. 24	대통령령제14,385호	군사법운영지원단 창설
단 창설식/현판식	'94. 9. 24	대통령령제14,385호	임석상관 : 차관 이정린
초대 단장 취임	'94. 9. 24	인사명령(장교) 제324호	해군대령 문정식(해사23기)
군사법운영지원단 관인 등록	'94. 10. 10	국방부공고 제1994-7호	관인조각사용(관보게재)
편제표 승인	'94. 10. 17	조일33110-337호	정원28명 (장교16,부사관5,군무원7)
부대기 제정	'95. 1. 18	군기령 (대통령령제14,223호)	군사법운영지원단기 제정
장비정수인가	'95. 2. 2	장비33430-41호	군사법운영단 장비 인가
단장(초대,2대)이 · 취임식	'95. 2. 9	인사명령(장교) 제412호	임석상관 : 1차관보 2대단장 : 공군대령 이희석
창설 제1주년 기념행사	'95. 9. 21	대통령령제14,385호	기념식, 체육활동, 기념만찬등
단장(2,3대)이 · 취임식	'96. 1. 31	인사명령(장교) 제 437호('95.12.30)	임석상관 : 법무관리관(이상도) 3대 단장 : 공군대령 정학진
창설 제2주년 기념행사	'96. 9. 24	대통령령제14,385호	기념식, 체육활동, 기념만찬등

연혁	일자	근거	내용
군사법운영지원단령 개정	'97. 4. 14	대통령령 제15,347호	법무운영단으로 단명 개칭 (송무부 신설, 3부 1처제제 편성)
법무운영단 현 판 식	'97. 4. 23	"	임석상관:법무관리관(이민재)
관인 재교부 및 폐기공고	'97. 4. 25	국방부 공고 제1997-7호	군사법운영지원단 관인 폐기 법무운영단 관인 등록(관보게재)
편제표 조정승인	'97. 5. 29	조관33110-126호	정원43명(장교21, 준사관2, 부사관7, 군무원13) ※편제인원증원(송무부9명심판부3명)
창설 제3주년 기념행사	'97. 9. 21	대통령령제14,385호	체육행사, 기념만찬
단장(4대) 취임	'97. 6. 19	인사명령(장교)제227호	육군대령 김창해 부임
단장(4,5대) 이·취임	'98. 1. 8	인사명령(장교)제444호	육군대령 박종철 부임
단장(6대) 취임	'99. 11. 20	인사명령(장교)제134호	육군대령(진) 김창해 부임
단장(7대) 취임	'00. 4. 1	인사명령(장교)제159호	육군대령 이성재 부임
고등군사법원 부대설치령 제정	'00. 6. 27	대통령령 제16,861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편제표승인	'00. 6. 27	기조33110-171	정원31명(장교16명, 부사관 6명, 군무원9명)
부대기제정	'00. 6. 29	군기령 (대통령령제14,223호)	고등군사법원 부대기
부대 창설식 / 현판식	'00. 7. 1	기조33111-126 ('00. 5. 23)	고등군사법원 창설식 (임석상관 : 차관 박용옥)
관인재교부 및 폐기공고	'00. 7. 5	국방부 공고 제2000-14호	관인 등록(관보게재)
장비정수인가승인	'00. 7. 8	군장33430-126	고등군사법원 장비정수인가
편제표 조정승인	'01. 3. 23	기조33111-83	서기요원소속전환/ 행정요원직책변경

고등군사법원 약사

일자	제목	관련근거	비고
2000. 7. 1	고등군사법원 창설/기념식 (국방회관)	대통령령 제16,861호 (‘00. 6. 27)	임석상관:차관(박용옥) 배석:법무관리관(김진섭)
2000. 7. 2	직원 보직신고 · 고등군사법원장대리 대령 이성재 · 고등1부군판사 송호택, 조태천 · 고등2부군판사 김영석 장보식 · 재판연구부 김남선(보통군판사겸임) · 국선번호부 임재훈 · 행정처장 박경진 · 재판사무과 유병주등 5명 · 행정과 박종배등 3명	· 인사명령(장교) 제290호(‘00.7.1) · 인사명령(장교) 제288호(‘00.6.30) · 인사명령(하사관) 제 33호(‘00.6.30) · 인사명령(군무원) 제 2호(‘00.7.3)	
2000. 7. 3	전속 및 보직 신고 · 중사 김형규(고등심판서기)	· 인사명령(하사관) 제 34호(‘00.7.10)	
2000. 7. 8	청사 신축 기공식		임석상관:차관(박용옥) 배석:법무관리관(김진섭)
2000. 7. 24	전속 및 보직 신고 · 상사 이규복(예산/경리 담당)	· 인사명령(하사관) 제 36호(‘00.7.20)	
2000. 8. 28	장관 업무보고		장관: 조성태
2000. 9. 26	차관 초도 순시		차관: 문일섭
2000. 9. 1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 대령 이성재 · 소령 조태천 · 소령 김영석 · 소령 장보식 · 소령 김남선 · 소령 신동호		장관 조성태 직수
2000. 9. 30	건군제152주년국군의날 표창 수여식 · 국무총리: 법원장 대령 이성재 · 장관: 5급 유병주	상훈/표창규정	법원장실

일자	제목	관련근거	비고
2000. 10. 1	군판사 윤리 강령 제정/ 시행	국방부령 제 699호 (’00. 9. 1)	군판사 윤리강령 별첨
2000. 10. 23	전속 및 보직 신고 · 준위 이재철(보통 심판서기)	· 인사명령(준사관) 제 19호(’00.10.23)	
2000. 12. 18	전군 군판사 세미나 · 장소 : 육군회관 · 참석인원 35명		초빙강사 · 박시환 부장판사 · 정종섭 교수
2000. 12. 31	종무식		대 법 정
2001. 1. 2	시무식		대 법 정
2001. 1. 12	전속 및 보직 신고 · 중사 박홍복(고등심판서기)	· 인사명령(하사관) 제 59호(’00.12.19)	
2001. 2. 19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개통 http://www.mnd.go.kr/8091		
2001. 3. 7	직원단합대회 (강화사적지/문수산성/초지진)	법원장 주재 (대령 이성재)	직원20명 참석
2001. 3. 12	전속 및 보직 신고 · (임)소령 김양홍(재판연구부장 대리) · 소령 김영석(해군본부부)	· 인사명령(장교) 제 101호(’01.3.6)	
2001. 3. 14	전속 및 보직 신고 · (임)소령 김정주(고등 2부 고등군판사)	· 인사명령(장교) 제 42호(’01.1.30)	
2001. 3. 23	전속 및 보직 신고 · 소령 박영만(고등1부 고등군판사) · 소령 김기영(고등2부 고등군판사) 보직 변경 신고 (편제개편에 의거) · 소령 김정주 면. 고등1부 고등군판사 보. 고등2부 고등군판사 · 준위 이재철 면. 보통부 심판서기	· 인사명령(장교) 제 149호(’01.4.3) · 인사명령(준사관) 제 10호(’01.4.6)	

일자	제목	관련근거	비고
	보. 행정처 재판사무과 보통심판서기 · 중사 오순희 면. 고등1부 고등심판서기 보. 행정처 재판사무과 고등심판서기 · 중사 김형규 면. 고등2부 고등심판서기 보. 행정처 재판사무과 고등심판서기 · 중사 박홍복 면. 고등1부 고등심판서기 보. 행정처 재판사무과 고등심판서기 · 상사 이동제 면. 행정처 재판사무과 전산/통계담당 보. 행정처 재판사무과 민원/통계담당	· 인사명령(부사관) 제 21호('01.3.29)	
2001. 3. 24 ~ 5. 18	파견 근무 · 소령(진) 김홍석(고등군판사 업무 지원요원) · (임)소령(진) 박영만(고등군판사 업무 지원 요원)	· 인사명령(장교) 제 128호('01.3.20)	
2001. 4. 4	자연보호 활동 참가(관악산)	· 시환 67050-2160 ('01. 3. 8) 군환경 정책 9대 과제 통보	직원20명 참석
2001. 4. 6	군 법무관(법무 14기) 사법연수원 입교식 참석		법원장(이성재)
2001. 4. 30	전속(전역)신고 · 대위 임재훈(육군본부부, 전역 원복)	· 인사명령(장교) 제 149호('01.4.3)	
2001. 5. 3	육군 법무병과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참석 · 장소 : 육군회관	· 제55주년 법무병과의 날 행사 · 법법 09107- 010038('01.4.25)	법원장/군판사 5명 참석
2001. 5. 14	신청사 건립 관계관 회의 · 장소 : 법원장실 · 참석자:법원장,수석판사김홍석, 행정처장박경진, 유진건설 백소장, 현장감독관 (한중령)		검찰단측 참석자 (단장,고등검찰부장, 사무처장)

일자	제 목	관련근거	비 고
2001. 5. 16	전속 및 보직 신고 · 중위 광상기(국선번호부 국선번호장교)	· 인사명령(장교) 제 215호('01.5.20)	
2001. 5. 19	전속 및 보직 신고 · 소령(진) 김홍석(고등1부 고등군판사)	· 인사명령(장교) 제 184호('01.4.20)	
2001. 5. 23	직원 체육행사 (볼링대회) · 장소 : 청룡회관(용산구 남영동)	전직원 단합대회 (법원장 주재)	
2001. 5. 31	3군 군판사 회의 참석 (고등군사법원장 훈시)		대령 이성재
2001. 5. 31	전속(전역)신고 · 소령 조태천(육군본부부, 전역원복) · 소령 송호택(육군본부부, 전역원복) · 소령 김남선(육군본부부, 전역원복) · 소령 장보식(공군본부부, 전역원복)	· 인사명령(장교) 제 202호('01.4.30)	법무 9기
2001. 6. 21	육군 군판사반 (종합행정학교 교육중) 고등군사법원 방문/견학		소령 권락균등 10명 참석
2001. 6. 28	창설 1주년 기념 전군 군판사회의/ 세미나 · 장소 : 육군회관 (법무관리관, 법원장) · 강사 : 박종철 변호사, Col. Louis · 참석인원 : 35명		법무관리관 :소장 김진섭 고등군사법원장 :대령 이성재
2001. 7. 2	부대창설 1주년 기념행사 / 기념식 · 장관 표창 : 중사 오순희 · 법원장 표창 : 이도선 백숙현 안경자	· 대통령령 제16,861호('00.6.27)	대 법 정
2001. 7. 16	고등군사법원장 (대령 이성재) 국군의 방송 인터뷰 (창설 제1주년을 맞은 고등군사법원의 기능과 역할)	제53회제헌절기념	국방 홍보원 국군방송보도과 (T. 900-4744)
2001. 7. 19	차관님 신청사 순시 /고등군사법원 업무보고(10:00~11:00)	차관 : 권 영 효	배석:기획관리실장 법무관리관 고등군사법원장

일자	제 목	관련근거	비고
2001. 7. 23	전속 및 보직 신고 · 상사 정대기(행정처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C인사명령(부사관) 제 41호('01.7.19)	
2001. 8. 20 ~ 8. 25	'01 UFL (을지연습)	· 동기 36312-526 ('01. 7. 25) '01 을지연습계획	전직원 참가
2001. 9. 10	이스라엘 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방문 (14:00)	고등군사법원장 초청	환담 : 법원장실
2001. 9.	한 · 미 군판사 간담회 (미 육군 제6순회 군판사 일행)	고등군사법원장 초청	Col. smith 대령 등 6명 참석
2001. 9. 30	국군의날 표창수여식 · 대상 : 대통령 표창 (준위 이재철) 장관 표창 (9등급 백숙현)	건군제153주년기념	법원장실 (고등군사법원장 전수)
2001. 10. 19	“신청사” 입주		
2001. 10. 23	신청사 준공식(11:00)	유진건설 사장 계획예산관, 정책조정관 감사관, 합조단장 근무지원단장	임석상관 : 차관 배석:기획관리실장 법무관리관등 7명
2001. 11. 2	체육행사 / 직원 단합대회	추계 체육행사	장소:용인민속촌
2001. 11. 21	법원/검찰단 체육 행사 (축구시합)		고등군사법원 2 : 1승
2001. 11. 28	군법무관(14기)시보고등군사법원 법정견학		
2001. 12. 1	진급신고 · (임)중령 김홍석	· 인사명령(장교) 제 469호('01.11.21)	
	보직 변경 및 임명 · (임)중령 김홍석 면. 고등1부 고등군판사 보. 고등1부장 대리 임. 고등군판사	· 인사명령(장교) 제 502호('01.12.12)	
2001. 12. 13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김홍석, 박영만, 김정주, 김기영, 김양홍)		법무관리관(김진섭) 전수

일자	제목	관련근거	비고
2001. 12. 17	고등군사법원장이 · 취임식 (국방회관 태극홀)	· 인사명령(장교) 제 493호('01.12.8)	임석상관 : 차관권영효 2대 법원장:대령 박주범
2001. 12. 17	보직 및 보직 만료 · 대령 박주범 보. 고등군사법원장 · 대령 이성재 면. 고등군사법원장		· 인사명령(장교) 제 493호('01.12. 8)
	임명 · 대령 박주범(고등군판사) · 대령 박주범(고등군사법원 물품관리관)		· 인사명령(장교) 제 500호('01.12.18) · 인사명령(장교) 제 15호('02.1.15)
2001. 12. 31	종무식 (15:30~16:00)		소회의실
2002. 1. 1	군무원 승진/ 임명 · 수사군무서기관 박경진 임. 정보군무 부이사관 보. 행정처장 면. 행정처장 대리 · 수사군무사무관 유병주 임. 수사군무서기관 보. 재판사무과장 면. 재판사무과장 대리	· 인사명령(군무원) 제 70호('01.12.24)	
	군무원 승진/ 임명 · 수사군무주사보 정윤석 임. 수사군무주사 보. 인사, 서무담당 · 수사군무서기 이도선 임. 수사군무주사보 보. 고등1부 심판서기 · 기능 9등급 안경자 임. 기능 8등급 보. 고등군사법원장 비서	· 인사명령(군무원) 제 16호('01.12.28)	

일자	제목	관련근거	비고
	· 기능 9등급 백숙현 임. 기능 8등급 / 보. 법령, 자료담당 · 기능 10등급 김영순 임. 기능 9등급 / 보. 사건접수담당		
2002. 1. 2	사무식/등산(청계산)	주관:법무관리관 (김진섭)	법무관리관실 및 고등군사법원/ 검찰단합동행사
2002. 2. 1	군무원 승진/ 임명 · 수사군무주사 박종배 임. 수사군무사무관 보. 행정과장 면. 행정과장 대리	· 인사명령(군무원) 제 5호('02.1.30) · 인사명령(군무원) 제 2호('02.1.31)	
2002. 2. 25	전속 및 보직 신고 · 중령(진) 백인주(재판연구부장 대리)	· 인사명령(장교) 제 71호('02.2.26)	
2002. 2. 27	보직변경 · 소령 김양홍 면. 재판연구부장 대리 보. 보통부 보통부장 대리	· 인사명령(장교) 제 71호('02.2.26)	
2002. 3. 31	전속 및 전역 신고 · 중위 곽상기(육군본부부, 전역원복)	· 인사명령(장교) 제 71호('02.2.26)	
2002. 4. 1	전속 및 보직 신고 · 대위 박찬익(국선변호부 국선변호장교)	· 인사명령(장교) 제 132호('02.4.10)	
2002. 4. 10 ~ 4. 30	파견 근무 및 전속 / 보직 신고 · 중위 심현욱 명. 고등군사법원 보. 재판연구부 재판연구관	· 인사명령(장교) 제 132호('02.4.10)	'02. 5. 1.부 고등군사법원 전속
2002. 5. 1	직원 체육행사 (청계산)	춘계 체육행사	직원 21명 참석
2002. 5. 7	미8군 군판사 초청행사/ 오찬(소회의실) · 고등군사법원 법정 견학 / 법원장 환담	고등군사법원장 초청	미군 법무관 5명 변호사 1명, 사병 2명 참석
2002. 5. 8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 검찰단 친선 탁구시합		법원 3 : 2 승

일자	제목	관련근거	비고
2002. 5. 20	전속 및 보직 신고 · 상사(진) 오순희(육군본부부, 원대 복귀) · 중사 박수자(행정처 재판사무과 고등심판서기)	· 인사명령(부사관) 제 25호('02.5.13)	
2002. 6. 1	임명 · 상사 이동제(보통심판서기)	· 인사명령(부사관) 제 28호('02.6.3)	
2002. 6. 24	미8군 군판사 초청행사 참석 (09:00~13:00)	미 8군 순회 군사법원 초청 (Gary W. Smith 대령)	고등군사법원장/ 군판사등 10명 참석
2002. 7. 1	부대창설 제2주년 기념행사 ○1부:기념식/표창수여식(7.1. 09:00~10:00) · 장관 : 중 사 김형규 · 원장 : 상 사 정대기 중 사 박홍복 9등급 김영순	· 대통령령 제 16,861호('00.6.27)	고등군사법원 소회의실
	○2부:전쟁기념관 관람(7.3.10:00~20:00)		전직원(사병포함)
	○3부:법률관련 영화관람(7.3.13:30~16:00) -제목 : A Few Good Man		장소 : 국방부 제 2회의실
	○4부:군판사 세미나(7.5. 13:00~20:00) · 대상 : 전군 군판사 35명 참석 · 초청강사/ 주제 - 변동걸 서울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군인에 대한 민간 법원에서의 1심판결 선고 후 항소된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결정) - 최용석 Oseo. com 대표 변호사 (21c 디지털 시대의 법조인의 자세)		육군회관
2002. 7. 24	특별 초청 강연(직장인들을 위한 매너교육) · 강사 : 허은아 (주)예라고 대표 · 장소 : 국방부 제 2회의실 · 주제 : 21C글로벌비즈니스컴뮤니케이션	군사법원/검찰단	및 국방부직원등 70명 참석

일자	제목	관련근거	비고
2002. 8. 5	파견 근무 및 보직 신고 명. 고등군사법원 부 보.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파견기간 : '02. 6. 22~8. 3 보직일자 : '02. 8. 5 부	· 인사명령(장교) 제 219호('02. 6. 19)	
2002. 8. 7	전속(전출) 신고 · 소령 박영만(육군본부부, 원복)	· 인사명령(장교) 제 272호('02.8.8)	
2002. 8. 12	전속 및 보직 신고 · 소령 김성건(고등부 고등군판사)	· 인사명령(장교) 제 272호('02.8.8)	
2002. 9. 17	추석절 불우 이웃돕기 성금전달 · 장소 : 야베스 선교원 · 방문자 : 재판연구부장, 행정처장 · 금액 : 25만원	인근 65121 - 2971 ('02. 9. 6)	
2002. 9. 18	장관님 청사방문/업무보고(15:00~17:30) · 수행 : 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관, 보좌관 · 배석:법무관리관,고등군사법원장,검찰단장		법원장실
2002. 9. 24	국정감사 (법사위) 수감 · 일시 : 10:00~15:00 · 장소 : 국방부 제 1회의실		
2002. 9. 25	특별 초청강연 (10:00~12:00) · 강사 : 장민기(조흥은행 법조타운 부지점장) · 장소 : 검찰단 대회의실		군사법원/검찰단 직원 38명 참석
2002. 9. 30	국군의 날 표창수여(10:00) · 대상 : 대통령 표창(박주범), 장관 표창(박홍복)	건군 제154주년 기념	
2002. 10. 16	직원 체육행사/ 등산(09:00~18:00) · 축령산 휴양림(남양주시 수동면)	추계체육행사	직원 19명 참석
2002. 10. 30	국토 대청소 운동/ 등산 (10:00~17:00) · 장소 : 북한산 (백운대)		직원 19명 참석

일자	제 목	관련근거	비고
2002. 11. 4	군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 (16:30~17:00) · 장소 : 고등군사법원 소회의실		교관(강사) 행정처장박경진
2002. 11. 6	법률관련 영화 상영(15:00~17:00) · 장소 : 검찰단 대회의실 · 제목 : 하이 크라이		군사법원/검찰단 직원30명참석
2002. 12. 1	진급신고 · (임)중령 백인주 보직변경 · (임)중령 백인주 면. 재판연구부장 대리 보. 재판연구부장	· 인사명령(장교) 제 388호('02.11.26) · 인사명령(장교) 제 411호('02.12.12)	
2002. 12. 6	'02년 사업분석 및 '03년도 사업계획 토의 · 장소 : 법원 소회의실 (10:00~11:00)		
2002. 12. 9 ~12. 21	심판서기 법원 공무원 교육 파견 · 대상 : 중사 박홍복, 중사 박수자, 준위 이재철		
2002. 12. 13	'02년도 사업분석 및 '03년도 사업계획 토의 · 장소 : 고등군사법원 소회의실 (15:00~17:00) · 대상 : 각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 검찰단장	법무33000-2428 ('02.11.26)	고등군사법원 소회의실
2002. 12. 16	군사법원 판결 요지집 발간 / 배포(250부)		대법원 대학교도서관 각군 보통군사법원
2002. 12. 17	직원 단합 대회(등산/ 송년회) · 모락산(의왕시 내손동)		
2002. 12. 31	종무식 (16:00~16:30)		소회의실

부대 설치령/ 변천사

□ 국방부 군사법운영 지원단령 (대통령령 제 14,385호)

-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부대기 도안
-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편성표

□ 국방부 법무운영단령 (대통령령 제 15,347호)

- 국방부 법무운영단 부대기 도안
- 국방부 법무운영단 편성표

□ 고등군사법원 설치령 (대통령령 제 16,861호)

- 고등군사법원 부대기 도안
- 고등군사법원 편성표
- 고등군사법원 편성표
(각 부서의 임무 및 기능)

국방부군사법운영지원단령

국방부군사법운영지원단령

[1994. 9. 24 대통령령 제14385호]

제1조(설치)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고등검찰부 및 국방부보통검찰부의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군사법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단장) ①지원단에 단장을 두되, 단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단장은 재판 및 수사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제3조(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①지원단에 심판부·검찰부 및 사무처를 둔다.

②각 부 및 처에 부장과 처장을 두되, 부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장교로, 처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심판부는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재판부의 구성 및 사법행정지원 업무를, 검찰부는 국방부고등검찰부 및 국방부보통검찰부의 구성 및 검찰행정지원 업무를, 사무처는 심판부 및 검찰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국선번호등의 법률지원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각 부 및 처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정원) 지원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부대기 도안

▲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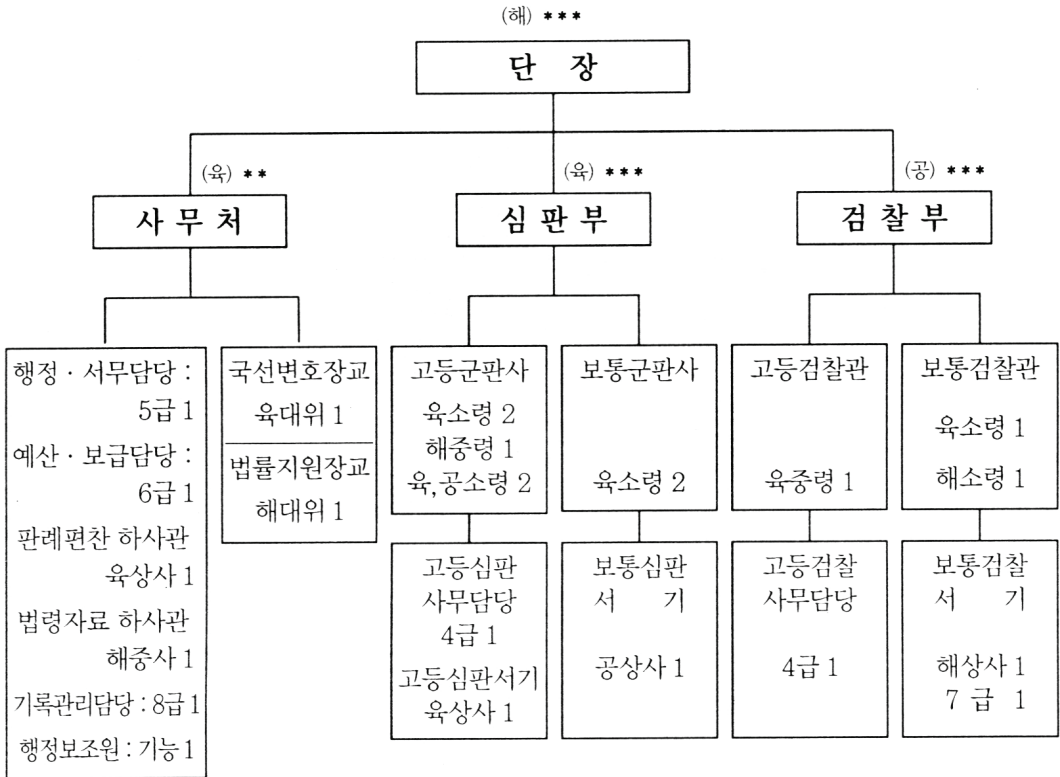
▲ 해설

- 바탕색 : 자주색
- 法 : 군사법을 표상
- 圓 : 법의 형평성을 뜻함
- 월계수 : 평화를 상징

■ 부대창설근거

부대명칭	창설근거	비 고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 군사법운영지원단령 (1994.9.24. 대통령령 제14385호)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가 지휘 하는 부대

■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병력 편성표



■ 임무 및 기능

▲ 임무

-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의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 관장

▲ 기능

-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 및 사법행정 업무 지원
- 국방부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의 구성 및 검찰행정업무지원
-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국선번호업무 및 법률지원
- 기타 군사법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법행정업무지원

국방부법무운영단령

[1994.9.24.대통령령제14385호]

개정 1997. 4. 14 대통령령 제15347호

제1조(설치)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고등검찰부 및 국방부보통검찰부의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국방부소관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법무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97.4.14.>

제2조(단장) ①운영단에 단장을 두되, 단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7.4.14.>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운영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7.4.14.>

③단장은 재판 및 수사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제3조(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①운영단에 심판부·검찰부·송무부 및 사무처를 둔다. <개정 '97.4.14.>

②각 부에 부장을, 처에 처장을 두되, 심판부장·검찰부장 및 송무부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장교로, 사무처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7.4.14.>

③심판부는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재판부의 구성 및 사법행정지원업무를, 검찰부는 국방부고등검찰부 및 국방부보통검찰부의 구성 및 검찰행정지원업무를, 송무부는 국방부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수행과 그 행정지원업무

를, 사무처는 심판부·검찰부 및 송무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국선변호등의 법률지원업무를 각 관장한다. <개정 '97.4.14.>

④각 부 및 처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정원) 운영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4.1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7.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5호중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으로 한다.

국방부 법무운영단 부대기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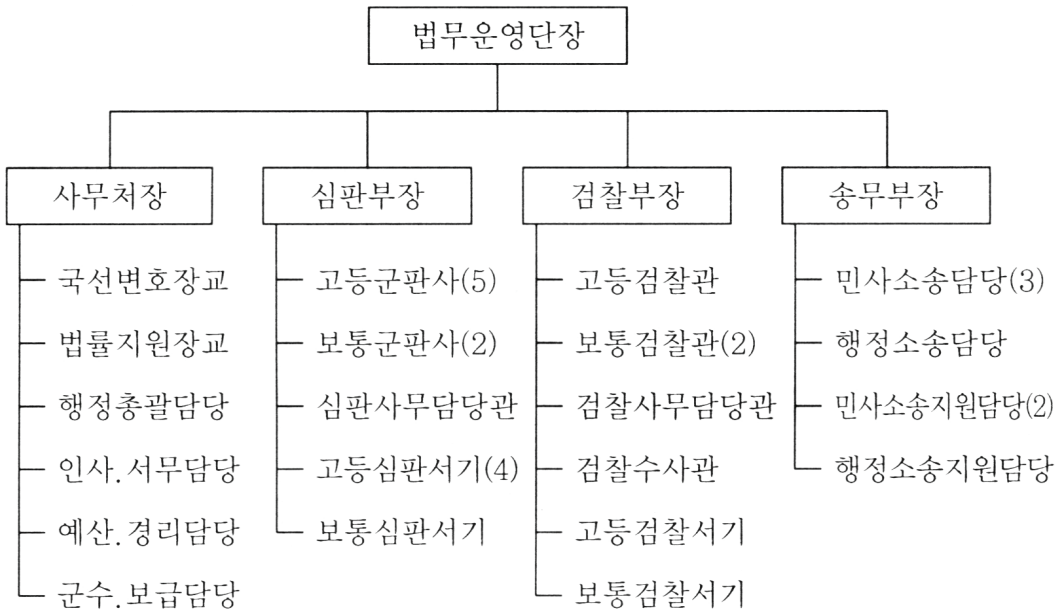
▲ 도안



▲ 해설

- 바탕색 : 자주색
- 法 : 군사법을 표상
- 圓 : 법의 형평성을 뜻함
- 월계수 : 평화를 상징

■ 편성



■ 임무

- 가. 고등법무운영단장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 및 보통 검찰부의 운영
- 나. 국방부 소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 기능

- 가.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업무수행
- 나. 국방부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의 검찰업무 관장
- 다.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국선변호 및 법률지원
- 라. 국방부 소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된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및 소송행정업무 처리
- 마. 기타 군사법운영 및 소송관련업무 시행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정 20 00.06.27 대통령령제1686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및 업무 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등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국방부보통군사법원)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군판사중에서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군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각군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각군군사법원장은 각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각군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군사법원의 정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6861호, 2000.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국방부법무운영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고등군사법원 부대기 도안

▲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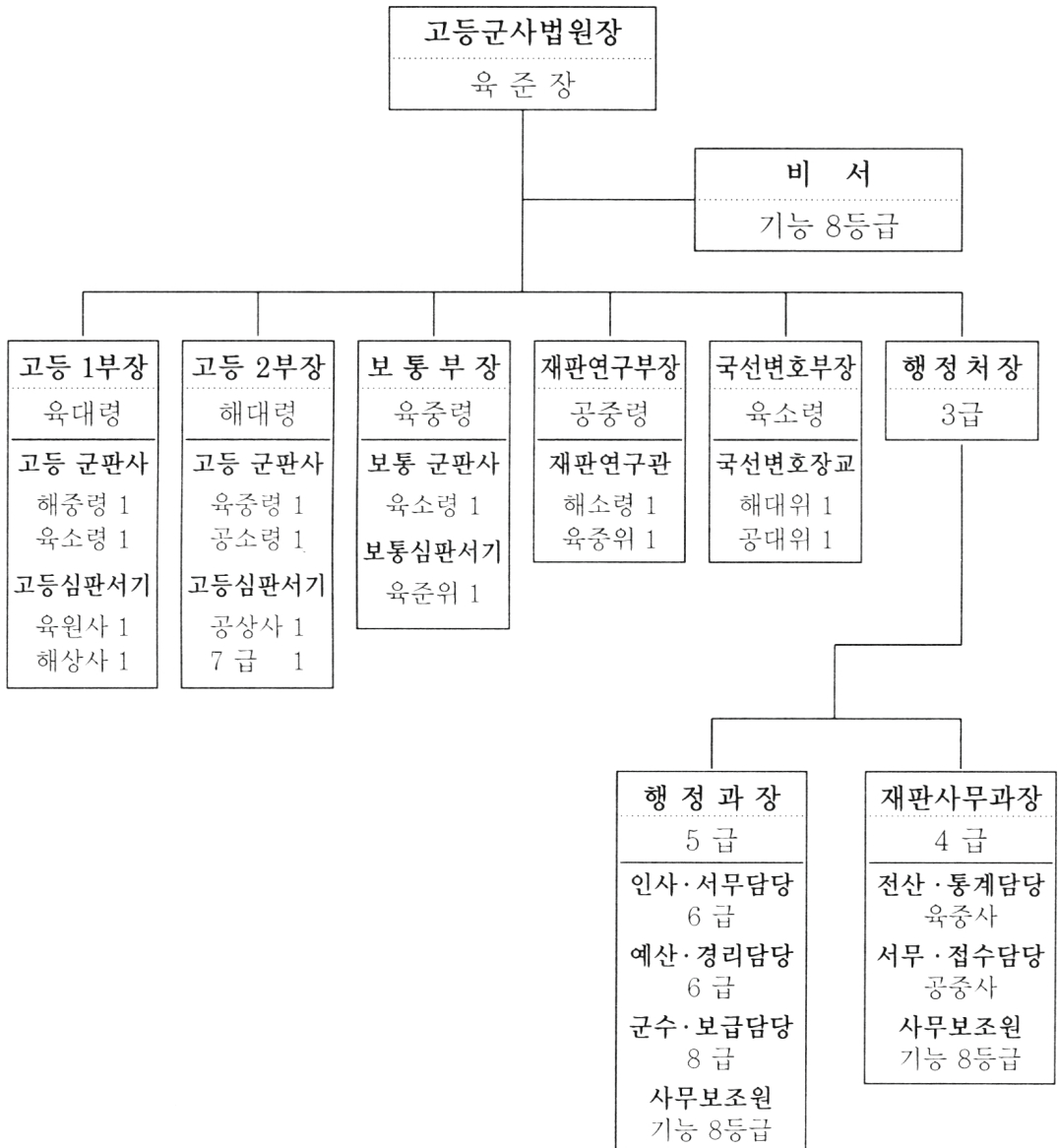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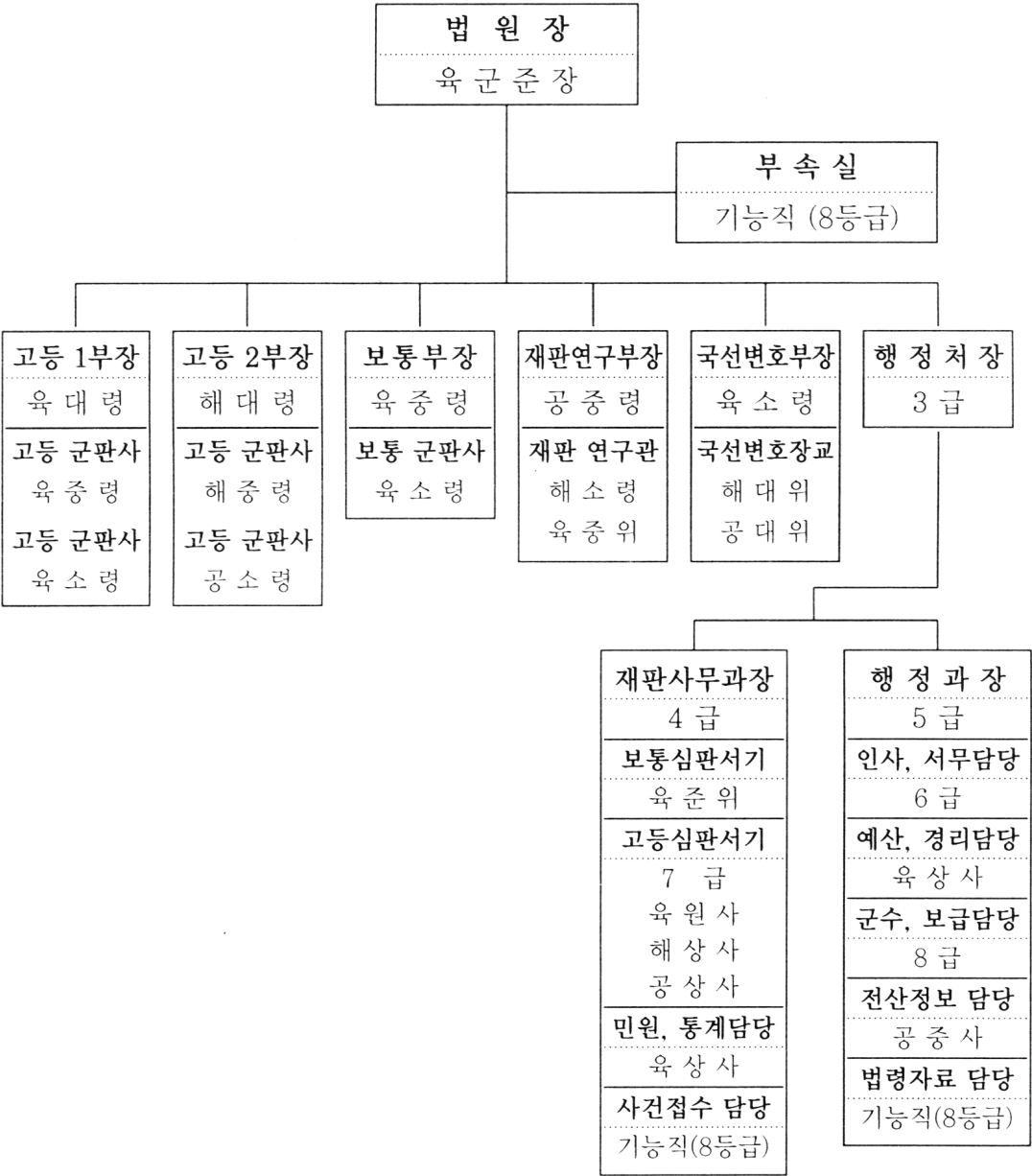
- 단순 · 명료한 전체디자인
 - 공명정대한 고등군사법원을 의미
- 자주빛 바탕
 -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결함을 상징(위엄, 성스러운 재판관)
- 붉은색 「법원」글씨
 - 엄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표상(생명, 힘, 정열, 사랑)

고등군사법원 편성/ 보직현황

▲고등군사법원 편제표('00. 7. 1~'01. 3. 22)



▲고등군사법원 편제표('01. 3. 23~ 현재)



▶ 편제직위/보직현황 ('00.7.1~ '01.3.22)

부서	직책	편제직위	계(직)급	군(순)번	성명	현보직일	비고
지휘부	군사법원장	육준장	육대령	268293	이성재	'00. 7. 1	
	사무보조원	기능8등급	기능9등급	0270004	안경자	"	
고 등 1 부	부장	육대령					공석
	고등군판사	해중령	해소령	920056	김영석	'00. 7. 1	
	"	육소령	육소령	91-17582	조태천	"	
	고등심판서기	육원사	육중사	80219455	오순희	"	
	"	해상사	해중사	5195677	정원덕	"	
고 등 2 부	부장	해대령					공석
	고등군판사	육중령	육소령	91-17599	송호택	'00. 7. 1	
	"	공소령	공소령	91-10710	장보식	"	
	"	공상사	공중사	727157	김형규	'00. 7. 3	
	고등심판서기	군무7급	군무8급	0270003	이도선	'00. 7. 1	
보통부	부장	육중령					공석
	보통군판사	육소령	육소령	91-17644	김남선	'00. 7. 1	겸직
	보통심판서기	육준위	군무7급	0270002	정윤석	"	겸직
재 판 연구부	부장	공중령					공석
	재판연구관	해소령	육소령	91-17644	김남선	'00. 7. 1	
	재판연구관	육중위					공석
국 선 변호부	부장	육소령					공석
	국선변호장교	해대위	육대위	98-17613	임재훈	'00. 7. 1	
	국선변호장교	공대위					공석
행정처	처장	군무3급	군무4급	503018	박경진	'00. 7. 1	
	재판사무과장	군무4급	군무5급	503772	유병주	"	
	전산/통계담당	육상사	육중사	80209719	이동제	'00. 7. 1	
	서무/접수담당	공중사					공석
	사무보조원	기능8등급	기능10등급	0270006	김영순	'00. 7. 1	
	행정과장	군무5급	군무6급	0270001	박종배	'00. 7. 1	
	인사/서무담당	군무6급	군무7급	0270002	정윤석	"	
	군수/보급담당	군무8급	군무8급	0270003	이도선	"	겸직
	예산/경리담당	육군상사	육상사	80117452	이규복	'00. 7.24	
	사무보조원	기능8등급	기능9등급	0270005	백숙현	'00. 7. 1	

▶ 편제직위/보직현황 ('01.3.23~ '01.12.31)

부서	직책	편제직위	계(직)급	군(순)번	성명	현보직일	비고
지휘부	군사법원장	육준장	육대령	273049	박주범	'01. 12. 17	
	사무보조원	기능8등급	기능9등급	0270004	안경자	'00. 7. 1	
고 등 1 부	부장	육대령	육중령	25452	김홍석	'01. 12. 1	
	고등군판사	육중령					공석
	"	육소령	육소령	93-17462	박영만	'01. 4. 24	
고 등 2 부	부장	해대령					공석
	고등군판사	해중령	해소령	93-10636	김정주	'01. 3. 14	
	"	공소령	공소령	93-10488	김기영	'01. 3. 23	
보통부	보통부	부장	육중령	공석			
	보통군판사	육소령	육소령	93-17461	김양홍	'01. 3. 12	검직
재 판 연구부	부장	공중령	육소령	93-17461	김양홍	'01. 3. 12	
	재판연구관	해소령					공석
	재판연구관	육중위					공석
국 선 번호부	부장	육소령					공석
	국선번호장교	해대위	육중위	99-20035	곽상기	'01. 5. 16	
	국선번호장교	공대위					공석
행정처	처장	3급	4급	503018	박경진	'00. 7. 1	
	재판사무과장	4급	5급	503772	유병주	'00. 7. 1	
	보통심판서기	육준위	육준위	310241	이재철	'00. 10. 23	
	고등심판서기	육원사	육중사	80219455	오순희	'00. 7. 1	
	고등심판서기	7급	8급	0270003	이도선	'00. 7. 1	
	고등심판서기	해상사	해중사	93-512171	박홍복	'01. 1. 12	
	고등심판서기	공상사	공중사	727157	김형규	'00. 7. 3	
	민원/통계담당	육상사	육상사	80209719	이동제	'00. 7. 1	파견
	사건접수담당	기능8급	기능10급	0270006	김영순	'00. 7. 1	
	행정과장	5급	5급(대)	02700011	박종배	'00. 7. 1	
	인사/서무담당	6급	7급	0270002	정운석	'00. 7. 1	
	예산/경리담당	육상사	육상사	80117452	이규복	'00. 7. 24	
	군수/보급담당	8급					공석
	전산/정보담당	공중사	공상사	91-500263	정대기	'01. 7. 23	
	법령자료담당	기능8급	기능9급	0270005	백숙현	'00. 7. 1	

▶ 편제직위/보직현황 ('02.1.1~ '02.12.31)

부서	직책	편제직위	계(직)급	군(순)번	성명	현보직일	비고
지휘부	군사법원장	육준장	육대령	273049	박주범	'01. 12. 17	
	비서	기능8등급	기능8등급	0270004	안경자	'00. 7. 1	
고 등 1 부	부장	육대령	육중령	25452	김홍석	'01. 12. 1	
	고등군판사	육중령					공석
	고등군판사	육소령	육소령	95-17751	김성건	'02. 8. 12	
고 등 2 부	부장	해대령					공석
	고등군판사	해중령	해소령	93-10636	김정주	'01. 3. 14	
	고등군판사	공소령	공소령	93-10488	김기영	'01. 3. 23	
보통부	부장	육중령	육소령	93-17461	김양홍	'02. 2. 27	
	보통군판사	육소령					공석
재 판 연구부	부장	공중령	공소령	93-10489	백인주	'02. 2. 25	
	재판연구관	해소령					공석
	재판연구관	육중위	육중위	00-20004	심현욱	'02. 4. 10	
국 선 변호부	부장	육소령	육소령	95-17766	송상엽	'02. 8. 5	
	국선변호장교	해대위					공석
	국선변호장교	공대위	공대위	00-10595	박찬익	'02. 4. 1	
행정처	처장	3급	3급	503018	박경진	'00. 7. 1	
	재판사무과장	4급	4급	503772	유병주	'00. 7. 1	
	보통심판서기	육준위	육준위	310241	이재철	'00. 10. 23	
	고등심판서기	육원사	육중사	98-508363	박수자	'02. 5. 20	
	고등심판서기	7급	7급	0270003	이도선	'00. 7. 1	
	고등심판서기	해상사	해중사	93-512171	박홍복	'01. 1. 12	
	고등심판서기	공상사	공중사	93-500159	김형규	'00. 7. 3	
	민원/통계담당	육상사	육상사	80209719	이동제	'00. 7. 1	
	사진접수담당	기능8급	기능9급	027006	김영순	'00. 7. 1	
	행정과장	5급	5급	504248	박종배	'00. 7. 1	
	인사/서무담당	6급	6급	0270002	정윤석	'00. 7. 1	
	예산/경리담당	육상사	육상사	80117452	이규복	'00. 7. 24	
	군수/보급담당	8급					공석
	전산/정보담당	공중사	공상사	91-500263	정대기	'01. 7. 23	
	법령자료담당	기능8급	기능8급	0270005	백숙현	'00. 7. 1	

고등군사법원 임무/기능

▲ 임 무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

▲ 기 능

- 제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한 재판 및 각종 영장발부
- 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국선번호 및 법률지원
- 법령자료 수집, 사건기록 보존·관리
- 기타 군사법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법행정업무

▲ 지휘관계 : 국 방 부

▲ 명령번호 및 일자

- 군사법원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6,861호, '00. 6. 27)
- 고등군사법원 편제표(안) 승인시달 (기조 33110-171, '00. 6. 27)
- 편제조정(안) 검토결과시달(기조33111-66, '01. 3.14)]

▲ 부대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각 부서의 임무 / 기능

▲ 지휘부

(가) 원 장

- 장관의 명을 받아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부구성 및 사법행정업무 관장
- 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관장
-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국선변호업무 및 기타 법률지원업무 관장

(나) 부원장(전시)

-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 고등 1·2부

-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
- 국선변호인 선정 및 취소 결정
- 보석신청, 재정신청 등 각종 신청사건, 형사보상금청구사건의 조사 처리
-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등 구속에 관한 결정
- 타관할에 속한 사건의 이송결정

▲ 보 통 부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한 재판
- 약식청구 사건의 처리
- 즉결심판청구 사건의 처리
- 각종 영장발부 및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사항
-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등 각종 신청사건, 형사보상금청구사건의 조사처리
- 구속기간의 연장 및 갱신, 구속취소 등 구속에 관한 결정

▲ 재판연구부

-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 군사법 판례 연구 및 법령자료 수집
-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제규정 관련 업무
- 군사법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국선번호부

-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국선번호
- 국방부분부 및 직할기관 장병에 대한 법률지원

▲ 행 정 처

(가) 행정과

-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 군인·군무원의 인사 관리
- 보안 및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운영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 물품의 구매 및 관리 운영
- 전산 정보에 관한 사항
- 자료 및 도서의 관리 운영
-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나) 재판사무과

- 재판의 참여
- 사건의 접수 및 배당에 관한 사항
- 소송기록(신청사건포함)작성처리 및 보관
- 상고기록 및 확정기록 송부처리
- 항소기록 흠결사항 지도 감독
- 민원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부책의 보존 및 기타 재판관련 민원 및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 각종 영장에 관한 접수 및 행정사항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한 재판사무 집행

주요 업무 현황

고등군사법원 중장기계획

목 차

- 임무 / 기능 및 인원
- 법규 · 제도 정비
- 고등군판사 역할 확대
- 재판연구부 기능 활성화
- 국선변호부 기능 활성화
- 행정처 기능 활성화
- 결론

임무 / 기능 및 인원

□ 임무 / 기능 및 인원

○ 임무 :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장

○ 기능

-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한 재판 및 각종 영장발부
- 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국선번호 및 법률지원
- 법령자료 수집, 사건기록 보존·관리

○ 현재인원

구분	총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근무원
정원	31	15	1	6	9
현재원	22	7	1	6	8
과부족	-9	-8	0	0	-1

□ 중장기 목표, 임무, 기능 및 인원

○ 추가될 임무 : 군판사·군사법원서기 보수교육 관장

○ 추가될 기능

- 군판사·군사법원서기 보수교육/세미나
- 각군 군사법원 재판사무 지도·감독
- 군사법원서기 전형 실시
- 국방부 지역 법률 상담

○ 현정원대로 인원 운영

-종행교의 군판사/검찰관/군사법원서기/검찰서기 교육 기능 및 인원 흡수

※ 종행교 현 보직 장교 5명, 부사관 1명→군법교육 지원담당 장교1명, 부사관 1명만 보직하고 잔여 인원은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검찰단에 각 보직하여 운영

○ 민간변호사 군판사로 활용(군사법원법 제23조 개정, 보수규정 제정시)

○ 국내 최고·최대의 군사관계 법률도서실 운영

법규, 제도 정비

□ 법규정비안

- 군법회의서기전형규칙(제정 1969.6.25. 국방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1979.4.10. 국방부령 제311호) 개정안 시행 준비

※ 법무과 군사법담당 동 규칙 개정안 이미 마련(2002.1.10. 각군 간담회 토의사항)

- 각종 군사법 관련 법규 정비안 마련 법무관리관실 제출

-군무원 직렬 정비

- 법무직렬 신설 또는 군무원인사법시행령(전문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08호) 부칙 제2조 직렬통폐합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법무직렬에 재직중인 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대로 행정직렬로 통합

-군사법원서기 재판업무수당 규정 신설

- 제1안: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대법원규칙 제1546호) 제16조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각급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지급)에 상응하는 군사법원업무서기 수당 규정 신설
- 제2안: 현재 국방부 검찰단 검찰서기 20명은 검찰수사활동비(203-00 특수활동비)로 매월 18만원 지급받고 있는 바, 고등군사법원 자체 예산에 군사법원서기 활동비 항목을 반영(가장 현실적인 방안)

- 고등군사법원 편제의 임무·기능 변경(병과원 보수교육 등)

□ 제도정비안

- 군사법원서기 전형 실시
- 국선변호인 POOL제도 운영 (대한변협에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POOL 선정 의뢰)
- 군판사·군사법원서기 보수교육 실시
- 군판사·군사법원서기 세미나 정례화
- 재판연구부 기능 활성화
 - 군판사 보수교육/세미나 담당(인원 보강), 각종 군사법업무 책자 발간
- 국선변호부 기능 활성화 (국방부 지역 법률상담 담당)
- 행정처 기능 활성화
 - 군사법원 판결 법원공보 수록, 주요 판결례 대외홍보(법률신문) 담당
 - 군사법원서기 보수교육/세미나 담당
 - 각군 군사법원과 연계된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운영

고등군판사 역할 확대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업무 수행

- 항소심 주 1회(화요일) 정기적으로 공판 진행
- 주요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
- 신상필벌의 엄정한 적용
- 피고인 인권 최대한 보장
- 군판사윤리강령(국방부훈령 제669호) 준수하여 신뢰받는 재판상 정립
- 재정신청 사건 신속 처리
- 전관예우 금지

□ 각군 군사법원 지도·감독, 육군교도소 점검

- 각군 군사법원 판결문, 소송기록 하자사례 점검
- 군행형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반기 1회 정도 육군교도소 순회 점검
- 각군 군사법원 지도 방문 : 2002년 전반기

□ 각종 책자 발간 작업 지원

- 군사법원판례집 수록자료용 주요 판결문 수시 제출
 - ※ 1996년 군사법원판례집 보강 후 2002년 하반기 발간 예정
- 법원공보 수록용 판결문 및 대외홍보(법률신문) 주요 판결문 수시 제출
- 실질적인 군형사판례연구 실시
 - ※ 국방부 군사법논집 제6집에 고등군판사 김정주(군인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에 관한 검토), 박영만(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피침해 토지재산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헌법적 문제) 논문 각 수록
- 군사법원실무편람 등 각종 발간 책자 내용 검토

□ 군법무관(시보), 군사법원서기 교육 지원

○ 사법연수원, 종행교 군사법 관련 과목 교관 지원

○ 고등군사법원 군판사·군사법원서기 보수교육 수행시 일부과목 담당 교육

재판연구부 기능 활성화

□ 재판연구부 인원 충원

○ 재판연구부장(공군중령 1), 재판연구관(해군소령 1, 육군중위 1) 각 충원

※ 2002년 1/4분기 재판연구부장, 재판연구관 적임자 전속 요청

□ 군판사 보수교육/세미나, 전군 군판사회회의(군사법발전세미나) 준비(인원 보장시)

○ 군판사 보수교육 매년 하반기 정례적으로 실시: 2003년 하반기

※ 2003년 군판사 보수교육 예산 반영

○ 군판사세미나 고등군사법원 창설일인 7월 1일 전후 매년 실시

※ 2002년 군판사세미나 예산: 식비 50만원, 강사료 40만원

○ 전군 군판사 회의(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고등·보통군사법원 관 계관 참석): 2002.11.중

□ 각종 군사법업무 책자 발간

○ 군사법원실무편람 발간(각종 양식 CD로 수록): 2002년 상반기

- 각군 군사법원 양식 통일

※ 전문도서 구입비 2002년도 예산 225만원 전용

○ 군사법원판례집 발간: 2002년 상반기

○ 군사법원연감: 2003년부터 매년 발간(준비)

○ 군사법원법 해설서 발간: 2003년

○ 군사법판례평석집 발간: 2004년

○ 군형법해설서 발간: 2005년

□ 행정처와 공동으로 군사법원서기 전형 실시

○ 군법회의서기전형규칙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서기전형위원회가 설치되면 군사법원서기 전형 실시

국선변호부 기능 활성화

□ 국선변호부 인원 충원

○ 국선변호부장(육군소령 1), 국선변호장교(해군대위 1, 공군대위 1) 각 충원

□ 국선변호인 POOL제도 운영

○ 국선변호인 POOL 대한변협에 의뢰

→ 국선변호료 지급하여 실질적인 국선변호 지향

○ 국선변호료 현실화

※ 현재 1건당 국선변호료 지급액 96,700원(세금 3,300원 공제) 지급,
2002년도 예산 1,200만원

□ 국방부 지역 법률상담 담당

○ 적극적인 법률상담

○ 국방통합홈페이지(고등군사법원)에 법률상담란 신설

행정처 기능 활성화

□ 업무 효율성 제고

○ 전자결재 활성화

○ 재판사무자동화 체계 구축

- 각군 군사법원과의 재판업무 공유/판례 활용

- 대국회업무에 따른 각종 통계자료 처리 등

○ 군사법원서기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등으로 자질 업무능력 제고

※ 2002년 군사법원서기 2명 위탁교육 예정

□ 군사법원서기 보수교육/세미나 준비

○ 군사법원서기 보수교육 매년 하반기 정례적으로 실시: 2003년 하반기

※ 2003년 군사법원서기 보수교육 예산 반영

○ 군사법원서기세미나: 2002. 12. 중(매년 실시)

※ 2002년도 군사법원서기세미나 예산: 식비 70만원, 강사료 40만원

□ 홍보기능 강화

○ 각군 군사법원과 연계된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운영

- 각군 군사법원과 정보 공유, 인터넷망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

○ 군사법원 판결 법원공보 수록, 주요 판결례 대외홍보 담당

○ 법령자료실 운영의 내실화

- 도서구입비 증액

- 도서운영프로그램 구축

(LAN망을 통한 각군 도서관의 정보 교환/공유)

- 국방부 법률도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법무관리관실 · 법원 · 검찰 · 합참의 자료통합 관리, 통합 구입 · 통제)

□ 편제 검토 및 확장

- 법무직렬 신설 또는 법무직렬 통합 추진
- 현 편제 적정성 검토
- 보통군사법원서기병 1명 편제 반영
- 전산장교 또는 전산군무원 1명 편제 반영(재판업무 전산화)

□ 고등군사법원 내규 제정

- 외박규정, 경조사 직원에 대한 예우규정, 당직근무규정 등을 통합하여 고등 군사법원 내규 제정 : 2002년도 상반기

□ 처우개선

- 군법무관 2명 격년제로 해외연수(미국, 독일 등) 예산 반영
- 군사법원서기수당규정 신설 또는 군사법원서기활동비 예산 반영

□ 기타

- 제엄시행계획 보완(2002년 을지훈련시)
- 판결문(1심 1980-2000년) 색인부 작성 및 사건부(1심 1965년-2000년) 보수
- 군판사 보수교육/세미나, 전군 군판사회익(군사법발전세미나) 지원
- 각종 군사법업무 책자 발간 지원
- 각군 군사법원 재판사무 지도·감독 강화: 2000년 전반기 지도방문
- 재판연구부와 공동으로 군사법원서기 전형 실시(준비)
- 승용차 2대, FAX, 즉석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소형무전기, 칼라복사기 장비구입
- ※ 고등부(2층) 노후 복사기 교체, 법령자료실(4층) 복사기 조속히 배치

결론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게 충실히 수행하고, 위와 같이 각 부서의 기능이 보강된다면 우리 고등군사법원이 명실상부한 군내 최고의 군사법원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특별법원으로서의 지위와 대법원의 하급심으로서의 자리매김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군사법원 사건 처리 현황

(국방부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

1. 보통군사법원

□ 2000년(7.1.~12.31.) 사건처리 현황

○ 신분별 · 처분별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63	18	15	16	14	
확 정	소 계	46	11	11	12	12	
	유 죄	44	11	10	12	11	
	무 죄						
	공소기각등	2		1		1	
항 소		16	7	4	3	2	
이 송		1			1		
진 행 중							

○ 신분별 · 죄명별

죄명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총 계		63	18	15	16	14	
폭력,상해등죄		10		1	5	4	
교통범죄		31	10	9	5	7	
군무이탈죄		2			2		
절도,강도죄		3		1	2		
뇌물수수등		7	3	3		1	
국가보안법위반							
기 타		10	5	1	2	2	

○ 약식사건 처리

구분	총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정원	31	15	1	6	9

○ 관할관 확인조치

구 분	총 계	장 교	부 사 관	병	군 무 원	민 간 인
총 계	43	13	10	8	12	
원판결확인	40	11	10	8	11	
감 형	3	2			1	

○ 구속영장 발부

청 구	발 부	기 각
29	29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신 청	심 문 후 처 리	
	발 부	기 각
총 계		

○ 통신 제한 조치

청 구	발 부	기 각
12	12	

○ 즉결심판

청 구	심 판	기 각
2	2	

○ 신청사건 처리

총 계	보 석	구속적부심사	기타
13	11(6)	1	1

○ 보직 현황

직 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임 · 면 일 자	근 거
군판사	고등군사법원	육소령	91-17644	김남선	임 '00.7.1.	인명(장)327 ('00.7.25.)
군판사	합참법무실	육대위 (진)	95-17732	신동호	임 '00.7.7.	인명(장)327 ('00.7.25.)
서 기	고등군사법원	7급	0270002	정윤석	임 '00.7.1.	인명(군)3 ('00.7.7.)
서 기	고등군사법원	육준위	310241	이재철	임 '00.10.23.	인명(준)19 ('00.10.23.)

○ 재판일자 · 재판관 · 재판 사건

일자	재판관	재판 사건
7.20.	재판장 심판관 공군대령 오준수 군판사 육군소령 김남선 군판사 육군대위(진) 신동호	2000고10 해군중령 박○○ 뇌물수수 사건 등 11건 13명
8.18.	재판장 심판관 공군대령 오준수 군판사 육군소령 김남선 군판사 육군대위(진) 신동호	2000고25 육군대령 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등 2건 2명
9.22.	재판장 심판관 공군대령 오준수 군판사 육군소령 김남선 군판사 육군대위(진) 신동호	2000고19 육군중령 정○○ 제3자 뇌물취득 사건 등 14건 15명
9.26.	재판장 심판관 육군준장 유선준 군판사 육군소령 김남선 군판사 육군대위(진) 신동호	2000고31 육군준장 유○○ 외 2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사건
10.19.	재판장 심판관 공군대령 오준수 군판사 육군소령 김남선 군판사 육군대위(진) 신동호	2000고30 공군소령 안○○ 혼인빙자간음 사건 등 13건 13명
12.14.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황영수 군판사 육군소령 김남선 군판사 육군소령 신동호	2000고21 육군소령 김○○ 제3자뇌물취득 사건 등 9건 9명

□ 2001년 사건처리 현황

○ 신분별 · 처분별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109	41	20	27	21	
확 정	소 계	77	22	14	23	18	
	유 죄	75	21	13	23	18	
	무 죄						
	공소기각등	2	1	1			
항 소		30	19	5	3	3	
이 송		1			1		
진 행 중		1		1			

○ 신분별 · 죄명별

죄명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총 계		109	41	20	27	21	
폭력,상해등죄		15		3	7	5	
교통범죄		20	4	5	5	6	
군무이탈죄		2			2		
절도,강도죄		4		2	2		
뇌물수수등		22	17	3		2	
국가보안법위반							
기 타		46	20	7	11	8	

○ 약식사건 처리

구분	총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정원	29	10	11	5	3

○ 관할관 확인조치

구 분	총 계	장 교	부 사 관	병	군 무 원	민 간 인
총 계	92	40	21	14	17	
원판결확인	85	33	21	14	17	
감 형	7	7				

○ 구속영장 발부

청 구	발 부	기 각
28	27	1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신 청	심 문 후 처 리	
	발 부	기 각
10	9	1

○ 통신 제한 조치

청 구	발 부	기 각
12	12	

○ 즉결심판

청 구	심 판	기 각
1	1	

○ 신청사건 처리

총 계	보 석	구속적부심사	기타
7	6	1	

○ 형사보상청구

청 구	인 용	기 각
1	1	1

○ 보직 현황

직 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임·면 일 자	근 거
군판사	고등군사법원	육소령	93-17644	김양홍	임 '01.3.12	인명(장)101 ('01.3.6.)
서 기	고등군사법원	7급	02700024	정윤석	면 '01.3.16.	인명(군)1 ('01.3.17.)
군판사	합참법무실	육소령 (진)	95-17765	정탁교	임 '01.4.9.	
군판사	합참법무실	육소령	95-17732	신동호	면 '01.4.9.	
군판사	합참법무실	공대위	99-10448	윤대해	임 '01.5.2.	인명(장)222 ('01.5.15.)
군판사	고등군사법원	육소령	91-17644	김남선	전역 '01.5.31.	인명(장)202 ('01.5.31.)
서기	편제개편에 의거 '보통부 보통심판서기' 에서 '행정처 재판사무과 보통심판서기' 로 보직변경('01.3.24.)					

○ 재판일자 · 재판관 · 재판 사건

일자	재 판 관	재 판 사 건
2.5.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장명식 군판사 육군소령 김남선 군판사 육군소령 신동호	2001고3 육군상사 이○○ 제 3자뇌물수수 사건 등 16건 16명
3.28.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송행용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 신동호	2001고5 육군대령 정○○ 뇌물 수수 사건 등 5건 5명
4.16.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고복남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 정탁교	2001고8 육군소령 박○○ 제 3자 뇌물취득 사건 등 20건 20명
5.7.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송희선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 정탁교	2001고12 육군소령 이○○ 뇌물수수 사건 등 12건 15명

일자	재판관	재판사건
6. 14.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안택원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 정탁교	2001고16 군무원(3급) 양○○ 폭처법위반 사건 등 14건 13명
7. 6.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안학승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진) 정탁교	2001고29 육군원사 박○○ 특가 법위반(뇌물) 사건 등 15건 15명
8. 9.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전용식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진) 정탁교	2001고48 육군준위 김○○ 제3 자 뇌물취득 사건 등 9건 9명
9. 13.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오규환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진) 정탁교	200고51 군무원(5급) 강○○ 뇌물수수 사건 등 7건 7명
9. 28.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민충식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진) 정탁교	2001고55 육군대령 장○○ 특가 법위반(뇌물) 사건 등 8건 9명
10.10.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정원모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진) 정탁교	2001고29 육군원사 박○○ 특가 법위반(뇌물) 사건 등 4건 4명
11.28.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박휘락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진) 정탁교	2001고55 육군대령 장○○ 특가 법위반(뇌물) 사건 등 8건 9명
12.28.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홍경수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 정탁교	2001고67 육군상병 조○○ 살인 사건 등 18건 18명

□ 2002년 사건처리 현황

○ 신분별 · 처분별

신분별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98	27	23	27	17	4
확 정	소 계		77	24	22	21	10	
	유 죄		73	24	21	21	7	
	무 죄		1		1			
	공소기각등		3				3	
항 소			15	2		4	5	4
이 송			1		1			
진 행 중			5	1		2	2	

○ 신분별 · 죄명별

죄명별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총 계			98	27	23	27	17	4
폭력,상해등죄			12		2	6	4	
교통범죄			62	23	20	14	5	
군무이탈죄			2			2		
절도,강도죄			8			4		4
뇌물수수등			2				2	
국가보안법위반								
기 타			12	4	1	1	6	

○ 약식사건 처리

구분	총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정원	49	17	16	12	4

○ 관할관 확인조치

구 분	총 계	장 교	부 사 관	병	군 무 원	민 간 인
총 계	63	22	18	13	6	4
원판결확인	56	19	17	11	5	4
감 형	7	3	1	2	1	

○ 구속영장 발부

청 구	발 부	기 각
23	21(1)	2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신 청	심 문 후 처 리	
	발 부	기 각
4	4	

○ 통신 제한 조치

청 구	발 부	기 각
15	15	

○ 즉결심판

청 구	심 판	기 각
2	1	1

○ 신청사건 처리

총 계	보 석	구속적부심사	기타
3	2	1	

○ 보직 현황

직 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임·면 일 자	근 거
보통부 장대리	고등군사법원	육소령	93-17461	김양홍	임 '02.2.27	인명(장)71 ('02.2.26.)
군판사	고등군사법원	공중령 (진)	93-10489	백인주	임 '02.2.26.	인명(장)71 ('00.2.26.)
서 기	고등군사법원	육상사	80209719	이동제	임 '02.6.1.	인명(부)28 ('02.6.3.)

○ 재판일자 · 재판관 · 재판한 사건

일자	재 판 관	재 판 사 건
1. 25.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정열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대위 윤대해	2001고72 군무원(4급) 장○○ 뇌물수수 사건 등 7건 7명
2. 19.	재판장 심판관 육군준장 임치규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육군소령 정탁교	2001고76 육군대령 이○○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등 9건 1명
3. 2.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한삼성 군판사 육군소령 정탁교 군판사 공군대위 윤대해	2002초2 육군대령 이○○ 구속적부심청구 사건
3. 28.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이상훈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2002고5 군무원(5급) 강○○ 간통 사건 등 6건 7명
4.26.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원식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2002고7 육군원사 우○○ 특가법위반 사건 등 6건 8명
5.20.	재판장 심판관 해군대령 이상준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2002고11 민간인 유○○ 외 3 군용물강도상해 사건 등 7건 11명

일자	재판관	재판사건
6.21.	재판장 심판관 해병대령 조선행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002고8 육군대령(진) 이○○ 업무상배임 사건 등6건 10명
7.12.	재판장 심판관 공군대령 이성우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2002고12 공군중령 최○○ 도교법위반 사건 등 4건 4명
8.30.	재판장 심판관 해군대령 이성근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2002고14 육군중령 최○○ 특경법위반 사건 등 6건 10명
10.10.	재판장 심판관 해군대령 이병하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2002고8 육군대령(진) 이○○ 업무상배임 사건 등 3건 4명
11.11.	재판장 심판관 육군준장 임치규 군판사 육군소령 김양홍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2002고14 육군중령 최○○ 특경법위반 사건 등 5건 6명
12.13.	재판장 심판관 공군대령 이항우 군판사 육군소령 정택교 군판사 공군중령(진) 백인주	2002고20 육군병장 이○○ 폭처법위반 사건 등 7건 8명

2. 고등군사법원

□ 2000년(7.1.~12.31) 사건처리 현황

○ 신분별 · 처분별

신분별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기타
접 수			277	26	54	155	35	7	
확 정	소 계		276	26	54	155	35	6	
	유 죄		272	26	51	154	35	6	
	무 죄		1		1				
	기 타		3		2	1			
이 송			1					1	
진 행 중									
상 고			19	2	5	6	6		

○ 신분별 · 죄명별

죄명별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기타
총 계		277	26	54	155	35	7	
교통범죄		19	3	6	7		3	
폭력 · 상해등죄		67		5	53	8	1	
군무이탈죄		86	1	15	53	17		
대상관범죄(항명)		3			3			
절도 · 강도죄		19	3	5	9	2		
사기 · 횡령 · 배임		3		2	1			
국가보안법위반		1			1			
성범죄		18	1	7	5	5		
뇌물에 관한죄		17	14	2			1	
살인		1			1			
기 타		43	4	12	22	3	2	

○ 군별 항소현황

구 분	총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00. 7. 1 ~ '00. 12. 31	277	20	223	20	14

○ 재정신청

구 분	접 수	처 리	미 제
'00. 7. 1 ~ '00. 12. 31	20	20	0

▲ 무죄 사건

- 2000노 450 하사 곽○○ 강간치상(법리 오해)

▲ 상고사건 중 파기환송사건

- 2000노 164 중사 김○○ 군용물절도 등 (법리오해)
- 2000노 301 일병 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법리 오해)

□ 2001년(7.1.~12.31) 사건처리 현황

○ 신분별 · 처분별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기타
접 수		643	47	118	381	74	20	3
확 정	소 계	636	45	117	378	74	19	3
	유 죄	627	44	117	372	73	18	3
	무 죄	8	1		6	1		
	기 타	1					1	
이 송		5	1	1	3			
진 행 중		2	1				1	
상 고		39	11	7	14	3	4	

○ 신분별 · 죄명별

죄명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기타
총 계		643	47	118	381	74	20	3
교통범죄		60	8	20	15	10	7	
폭력·상해등죄		120	3	17	83	11	5	1
군무이탈죄		198	3	44	124	27		
대상관범죄(항명)		89	1	4	84			
절도·강도죄		50	3	9	25	13		
사기·횡령·배임		13	4	5	3		1	
국가보안법위반		2			2			
성범죄		41	5	7	21	8		
뇌물에 관한죄		19	12	2			5	
살인		3	2		1			
기 타		48	6	10	23	5	2	2

○ 군별 항소현황

구 분	총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01. 1. 1 ~ '01. 12. 31	643	26	564	35	18

○ 재정신청

구 분	접 수	처 리	미 제
'01. 1. 1 ~ '01. 12. 31	43	43	0

▲ 무죄 사건

- 2001노 42 상병 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불충분)
- 2001노 123 일병 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불충분)
- 2001노 428 상병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 없음)

▲ 상고사건 중 파기환송사건

- 2000노 402 상병 양○○ 폭행치사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오해)
- 2001노 32 이병 신○○ 상관협박 등 (채증법칙 위반)
- 2001노 76 하사 강○○ 군무이탈 등 (법리 오해)
- 2001노 135 소위 박○○ 강도상해 (유죄 입증에 관한 법리 오해)
- 2001노 114 소령 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수에 관한 법리 오해)
- 2001노 159,409(병합) 중위 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 등 (사형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 2001노 214 일병 최○○ 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 배척)
- 2001노 422 5급 유○○ 감금 등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한 법리오해)

□ 2002년 사건처리 현황

○ 신분별 · 처분별

신분별 \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서관	병	군무원	민간인	기타
접 수		424	35	71	221	79	13	5
확 정	소 계	352	25	60	188	63	11	5
	유 죄	349	25	60	186	63	11	4
	무 죄	3			2			1
	기 타							
이 송		4		1	1	2		
진 행 중		68	10	10	21	14	2	
상 고		30	10	5	9	2	4	

○ 신분별 · 죄명별

죄명별 \ 신분별		총 계	장 교	부서관	병	군무원	민간인	기타
총 계		424	35	71	221	79	13	5
교통범죄		33	3	12	8	7	3	
폭력 · 상해등죄		63	7	10	34	10	2	
군무이탈죄		165	1	23	108	33		
대상관범죄(항명)		9	1	2	5		1	
절도 · 강도죄		39	2	5	12	16		4
사기 · 횡령 · 배임		18	3	3	7	3	2	
국가보안법위반		1	1					
성범죄		43	6	8	20	8	1	
뇌물에 관한죄		9	5				4	
살인		3		1	2			
기 타		41	6	7	25	2		1

○ 군별 항소현황

구 분	총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02. 1. 1 ~ '02. 12. 31	424	16	369	27	12

○ 재정신청

구 분	접 수	처 리	미 제
'02. 1. 1 ~ '02. 12. 31	44	33	11

▲ 무죄 사건

- 2002노 35 소위 박○○ 명령위반 등(민통선내에서 휴대폰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은 명령위반죄에 있어서의 명령이 아님)
- 2002노 일병 최○○ 145 살인미수 등
(살인미수 및 중상해에 대한 증거불충분)
- 2002노 김○○ 17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누설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상고사건중 파기환송사건

- 2001노 중사 윤○○ 466 강도강간 등 (피해자들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소년이 아님)
- 2001노 527 원사 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
- 2002노 2 일병 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법 위반 등 (채증법칙 위배)
- 2002노 92 5급 강○○ 항명 등 (상관면전 모욕죄의 법리오해)

참 고 사 항

군판사윤리강령

군판사는 군사재판을 통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전투력의 보존·발휘와 군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 군판사는 이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군 사법권의 독립가 군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군판사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군판사에게 요구되는 보다 높은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군판사는 뜻을 모아 군판사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제정하여 군판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군판사는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아래 준수하여 군판사의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조(군 사법권의 독립)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2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판사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군판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군판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군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한다.

④군판사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품위유지) 군판사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하고,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직무상 비밀엄수) ①군판사는 복무중 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②군판사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군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①군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군판사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군판사윤리강령위원회) 군판사윤리강령의 개정, 군판사 윤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군판사윤리강령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직능·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등군사법원 내규로 정한다.

②(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개정 2002년 11월 20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제47조, 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제10조 및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서기(書記),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자격)

①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보통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본부 법무감실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또는 각군 소속부대의 법무관련 참모부서에 근무하는 법무병과장교(군법무관을 제외한다)·준사관·부사관 또는 군무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군무원
3.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군검찰의 검찰수사관(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 ①서기의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 ②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1. 헌법
 2. 형법(군형법을 포함한다)
 3.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4. 민사법
 5. 논문(일반교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말한다)
-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군인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점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시험에서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격점수 이상을 받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수사관 전형방법의 예에 따라 서기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 ①검찰수사관의 전형의 면접시험·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접시험에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 ①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각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인을 포함한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고등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제6조(회의)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험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출제자 또는 시험간의 선정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전형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위원장은 서기의 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 ①서기 전형의 배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은 각 100점으로 하고, 면접시험은 50점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점에 의하여 종합한 성적인 550점을 만점으로 하되, 33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각 과목의 성적이 4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군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할부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합격자의 수가 각 군별 임명예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의 순으로 각 군별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 ①필기시험의 출제자는 각 과목마다 2인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시험관은 2일 이상으로 한다.
- ②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위촉한다.
 1. 법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판사
 3. 검사
 4. 군법무관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 ③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동안 이 규칙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外國의 軍事法院/軍事法院의 존립목적

高等軍事法院長 朴柱範

1. 머리말

우리 軍事法院은 해방이후 미군전청 법령 제86호에 의하여 제정된 조선경비대법(1946)과, 국방경비법(1948)·해군경비법에 의하여 美國의 軍法會議제도를 繼受하여 오다가,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하여 軍法會議를 존치하여 왔으며, 우리나라가 일제의 영향으로 대륙법계에 젖어있던 관계로 절차법의 상이에 따른 혼란과 헌법상의 인권보장규정의 불일치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다가, 1954년에 시행된 제2차 개정헌법에 이르러 군사재판의 憲法的 根據를 마련¹⁾ 하였으며,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의하여 1962년 법률 제1004호로 軍法會議法(軍事法院法으로 개칭됨)이 제정되어 중국적으로 민간 사법제도와는 구별된 독립적 형사절차를 가지게 된 것이다.

軍法會議의 소송절차는 일본의 1921년 軍法會議法과 미국의 1950년 군사법통일법전(UCMJ)을 참작하여 만들어졌다.²⁾

軍事法院法은 군내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로 군내부의 필요에 의하여 수차에 걸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軍內 死亡事故에 대한 각종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과,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소위 兵風 공방과정에서 그동안 잘알려져 있지 않았던 軍司法機關이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에 오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하여 군사법기구를 대폭 정비하여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터져나왔으며, 급

1) 1987년 헌법개정시 軍法會議의 명칭이 軍事法院으로 변경되었음

2) 이수경, 軍法會議제도의 연혁, 육군군사법연구 제3집 306쪽, 1985

3)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가 자식들의 병역면제 과정에 비리를 범하였는지에 대해 군 검찰관이 수사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당시 수사에 참여한 군검찰관계자 상호간에 진술이 서로 相異하여, 이를 두고 정치권이 침예하게 공방을 벌였음

기야 기존의 군사법기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나머지 軍事法院의 廢止 및 民間法院으로의 移管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 각국의 군사법운영 실태를 軍事法院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도대체 왜 特別法院인 軍事法院을 운영하여 왔고 운영여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 접근을 해 보기로 하였다.

2. 外國의 軍事法院 개관

근간의 군사법제도 개선 논란과 관련하여 高等軍事法院은 각종 인터넷자료 및 해외 주재 務官들을 통하여 각국의 군사법제도를 검색 파악한 결과 총 39개국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다음 도표와 같다.²⁾

구분(조사대상 총 39개국)	국가	비고
軍事法院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7)	오스트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베니아, 일본	· 일본은 1945년 이후 자위대 軍事法院을 운영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설치 준비중임
軍事法院과 민간법원을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국가(8)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불가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 일반법원에 특별부를 두거나, · 재판관의 일부를 군인으로 구성 · 독일은 군무법원(1심), 병무 재판소(항소심) 운영
軍事法院을 운영하는 국가(24)	캐나다, 덴마크,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터키, 미국, 이태리, 이집트,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호주, 페루,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칠레, 파키스탄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軍事法院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4) 이 데이터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나, 조사방법 및 대상에 있어 한계가 있었고 구분방법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 ① “Military Criminal Jurisdiction Abroad References And Experiences”, 1998년 로마에서 개 최된 세계군사법학회에 대비하여 이태리 대법원이 조사한 자료임
- ② 해외 주재 무관 응신 자료
- ③ 인터넷을 통한 검색 자료

흔히 원용되는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의미의 軍事法院은 없으나, 전쟁시를 구분하여 戰時에는 軍事法院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平時에도 군인들의 軍紀違反사항 및 訴願을 처리하는 軍務法院(Truppendienstgerichte)과 17개 地域軍務法庭(Kammer)을, 이에 대한 항소심으로 연방행정법원내에 兵務裁判所(Wehrdienstsenate)를 두고 있으며, 군무법원은 민간재판관 1인과 군인인 심판관 2인을, 병무재판소는 민간재판관 3인과 군인 배석관 2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⁵⁾

일본은 2차대전이 종료한 이후 自衛隊의 헌법상 성격에 따라 軍事法院을 운영하지 않다가 최근 軍事法院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⁶⁾

軍事法院과 민간법원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일반법원에 군사건을 전담하는 特別部를 두고 있거나(헝가리, 프랑스⁷⁾)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되 재판관을 軍法務官으로 하는 경우(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등)로 나뉘 볼 수 있다.

事法院을 운영하는 국가들도, 1심만 현역장교인 軍判事로 하고 항소심은 民間軍判事로 운영하기도 하고(미국⁸⁾, 캐나다), 대법원까지 현역 軍判事を 두고 있는 나라(스페인⁹⁾, 남아공¹⁰⁾, 브라질¹¹⁾), 軍事法院 판사를 전원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나라(스위스)등 나라마다 똑같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각색이다.

5)독일 국방부 제공 독일무관보고서. 2003. 3. 이하 각국 주재 무관보고서를 주로 참조하였음

6)일본은 2차대전 이전에는 군사법원을 운영하였으나, 종전이후 이를 폐지하였던바, 지난해 자위대 법무업무 부서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군사법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간 바가 있다.

7)프랑스도 해외주둔군에 대하여는 軍事法院을 두고 있다.

8)미국은 高等軍事法院의 軍判事(5명)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15년이다.

9)스페인은 대법원 5개 부서중 군사건을 담당하는 부를 두고, 민간법관 4명, 법무병과 소속 소將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남아프리카공화국은 3심을 대법관 3명, 군법무관 1명, 지휘관 경력을 가진 장교 1명 등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11) 브라질은 대법원에 예비역 大將 10인과 대법관 5인으로 군사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12)스위스는 14개 軍事法院을 운영하며 軍判事を 전원 민간인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스위스군이 평소에는 예비군 위주로 운영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임

3. 軍事法院의 존립목적/이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강국들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왜 民間 刑事節次와는 區別되는 獨立된 軍司法制度를 운영¹³⁾하고 있을까?

가. 美國(聯邦 大法院)

미국에서는 민간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軍事法院을 둔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⁴⁾. 첫째는 전 세계에 걸친 군대 요원을 派兵할 필요성, 둘째는 군대요원의 迅速한 動員의 필요성, 셋째는 전투로 인한 證人 採擇 困難을 피하고 迅速한 裁判을 받기 위한 필요성, 넷째는 전투준비와 전투로 인한 군대요원의 스트레스와 같은 兵營生活의 特殊한 성격, 다섯째로는 군대요원에 대한 軍 紀綱 確立의 必要性을 들고 있다.¹⁵⁾¹⁶⁾

또 다른 학자는 군대내 기강확립과 질서유지는 일반 민간 형사절차에 의해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민간 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하는데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군대에 고유한 범죄(순정 군사범)는 민간법원이 재판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지휘관이 軍 紀綱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군사법제도에 대하여는 군 지휘관이 일정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파병된 국가에 연방법원을 창설하는 것은 당해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¹⁷⁾

13)다만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종전후 사실상 군대의 보유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독립된 軍事法院을 갖고 있지 않다. 홍창식 “특별법원으로서의 軍事法院의 이념” 군사법논집 제 6집, Joshep W. Bishop Jr., Prospective the Case fer Military Justice, 62 Mil. L. Rev. 215,(1973)

14)이하는 위 홍창식의 논문을 인용하고 필자의 견해를 가감하기로 한다

15)Francis A. Gilligan & Fredric I. Lederer, Court-Martial Procedure V.I, p.4 참조.

16)미국육군법무관학교(버지니아주립대학내에 설립)의 기초과정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Why a separate Military Justice System ?

- a. Unique disciplinary needs.
- b. Need for an efficient system that can function in a spartan environment.
- c. World-wide jurisdiction.

17)Joshep W. Bishop Jr. Supra note 6, at 216-220.참조.

한편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 법원과 구별된 軍事法院은 필연적으로 군사법 절차에 指揮官의 不法的인 關與(illegal command influence)가 있기 마련이고 그 결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군대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 법원이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¹⁸⁾

아울러 현재 미국에서는 군사법통일법전(UCMJ) 제정 50週年을 맞이하여, 관할관과 법무참모의 군사재판 절차에서의 지나친 권한 통제, 軍判事의 독립성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신 또는 고정된 임기를 정하는 방안, 사형사건의 경우는 12명의 배심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¹⁹⁾ 등 기존의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²⁰⁾

한편, 미국의 聯邦 大法院은 독립된 軍事法院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훈련을 받고 또 경험 있는 군대 구성원이 군대규율을 위반한 군인에 대하여 재판을 행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이러한 훈련은 특히 재판 대상범죄가 순정 군사범죄일 경우 그 필요성을 더욱 크다고 판시하였다.²¹⁾ 또

18) Sherman, Military Justice Without Military Control, 82 Yale L. J. 1398, 1973, 그리고 The Civilization of Military Law, Maine L. Rev. 3 (1970) 참조.

19) 미군은 General Court-Martial 의 경우는 軍判事 1인과 5인 이상의 배심원, Special Court-Martial의 경우는 軍判事 1인과 3인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20) 미통일군사법전(UCMJ) 제정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01.3.13. 조지워싱턴 법과대학에 서 월터 티.콕스 판사를 위원장으로 250명 이상의 개인과 12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 가 열려 아래 사항을 결정하였다.

1. 관할관이 軍事法院의 배심원단을 선택하는 권한과 재판심리전의 법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軍判事의 권한으로 수정할 것.

2. 軍判事의 독립성 및 책임을 높이고 軍判事의 관리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

3. 법정형이 사형인 사건인 경우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실시하여야 함.

기타. 위원회는 법무참모의 정확한 임무, 행정절차에 관련된 공평성에 대한 질문, 軍判事의 형량 권한 및 高等軍事法院의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21) United States ex rel. Toth v. Qualles, 350 U.S. 11, 18 (1955), 이러한 설명은 미국의 軍事法院은 민간 법원의 배심원에 상응하는 Court Member 또는 Court Panel 에 의해서 유죄 및무죄 그리고 형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Court

다른 사건에서 大法院은 軍事法院이 민간 법원보다 군사적 필요성(military necessity)에 따른 군인 등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聯邦 大法院 판사인 Harlan은 보충 의견에서 만약 민간 법원에서 군인 등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예를 들면 군인이 민간 사법당국에 체포되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 비록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 민간 당국은 피고인이 그 재판권(토지 관할의 범위) 범위 내에 머물도록 명령할 수 있고, 결국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계류 중에는 군인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전출등 필요한 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²²⁾

나. 우리나라(憲法裁判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 형사재판 절차와는 구별된 군사재판 제도의 위헌여부를 1996년 憲法裁判所가 최초로 판단을 하였다. 軍事法院 설치근거조항인 軍事法院法 제6조의 違憲性에 대한 청구인의 취지는 3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는 憲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大法院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하였으므로 특별법원인 軍事法院도 大法院을 정점으로 하는 司法府내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行政府내의 각급 部隊에 설치됨으로서 三權分立의 原則에 違背되고, 둘째 憲法 제110조 제3항에서 軍事法院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軍事法院을 군부대에 설치한다는 명시적인 위임이 없으므로, 삼권분립과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위 軍事法院法 제6조는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으며, 셋째 軍事法院을 군부대에 설치하여 결국 法官이 아닌 軍人將校가 재판을 하게 되어 憲法 제27조 제1항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憲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였다.²³⁾

Member 또는 Panel을 배심원 (jurors)이라고 부르지는 않으며 배심원과는 그 숫자와 뽑혀지는 방법이 다르다.

22) O'Callahn v. Parker, 395 U.S. 258, 282-283.

23) 헌법재판소 전원합의회1996.10.31. 93 헌바 25, 헌법재판소 판례집 8-2, 449-450.

憲法裁判所는 이에 대하여 “특별법원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는 憲法 제 110조 1항이 일반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는 特別法院의 創設을 허용하고 있으며,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軍事法院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며, 다만 이러한 입법자의 권한은 헌법의 근본원리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위헌성을 판단하였다.²⁴⁾

憲法裁判所는 軍事法院을 군부대 내에 설치한 것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그 이유를 첫째, 군대 임무의 특수성 즉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을 요구되는 임무의 위험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군 조직을 유지 운용함에 있어서 軍紀의 維持와 指揮權 確立의 필요 불가결성, 둘째, 軍事犯罪의 特殊性 즉 범죄행위가 군대 내에 신속하게 전파되고 일거에 군 기강을 마비시키는 특수성, 셋째, 전·평시를 막론하고 빈번한 軍隊의 移動 및 機動性 등을 들고 있다. 즉 군 생활의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어디서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에 軍事法院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⁵⁾

軍事法院의 구성에 관하여는 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하기 위하여 관할관 제도의 필요성과 그의 軍判事 및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필요성, 나아가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장교를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⁶⁾

그리고 이러한 軍事法院體制가 戰時에 잘 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시에 그 조직이 미리 조직, 운용되어야 하며 그 필요성은 남·북간의 대치상황에서 더욱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 결정은 軍事法院의 근간에 대한 판단으로서 軍事法院의 憲法上의 地位와 그 必要性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4) Id.

25) Id. p.452-453. 참조.

26) Id. p.453. 참조.

다. 일반적 견해

그동안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目的的 측면

軍은 국가존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며, 이러한 군은 전승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군의 戰勝을 위하여는 일반사법과는 다른 군사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즉 군의 전투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하여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유지라든가 군기강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따라서 예컨대 군사법에 있어서 일정한 지휘관의 개입이나, 또는 일반형사 절차의 양형조건과는 다른 특수한 군사법의 양형조건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2) 法規的 측면

헌법은 공공법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을 필요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憲法上 特別法院으로서의 軍事法院을 豫定하고 있으므로 軍事法院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위 목적적 측면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3) 節次的 측면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개 군사법절차보다도 민간사법절차가 군인의 인권보장에 있어 보다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주장되어지는 것이나, 실제로 오히려 군사법절차가 민간사법절차보다도 군인의 인권보장에 보다 效率的이라는 것이다. 즉 군은 대부분의 경우 군사상 保安이라는 이유로 민간인들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閉刷的인 조직으로서 만약 민간사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증거수집등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한편, 일반 법원이 매우 정적인 조직임에 반하여 군은 군사적 목표에 따라 수시로 그리고 迅速한 機動이 요구되는 조직으로서 양자는 그대로 일치시키기 어려워 실제 사법절차에 많은 혼란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군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은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라. 私見

이러한 일반적 견해외에 필자의 사건을 몇가지 더하여 보면, 우선 軍隊의 存在 目的이 전쟁에 대비한 준비태세 유지와 전쟁 발발 시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신속한 재판과 그리고 재판에 따른 재배치를 위해서 민간 법원제도와는 구별되는 軍事法院을 둘 必要性이 있다. 예를 들면 민간 법원이 군인 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군인이 전시에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두려워 전투 지역으로 나가는 대신에 일부러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러한 군인들에 대한 민간 법원의 재판은 범법자가 시간을 끌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²⁷⁾ 또한 민간 법원이 평시에 군인 등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독립된 軍事法院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민간인들이 軍人 世界の 特殊性-극도의 위험과 스트레스, 생활형태, 엄격한 군기-에 대한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군인들에 대한 재판은 부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⁸⁾

나아가, 일반 사법기관이 군인에 대하여 사법권을 행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現實的 限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한 국가에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 신체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²⁹⁾할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檢·警·法院 등 司法機關이 그것이고, 다른하나 는 국가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를 사명으로 하는 軍이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생명을 포함한 각종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군은 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명적 무기들을 휴대할 뿐 아니라 판결없이 적을 살상하도록 훈련되어진 조직인데, 군을 구성하는 군인데

27) Francis A. Gilligan & Fredric I. Lederer, Supra Note 10, p.4. 참조.

28) Id.

29) 사법기관은 합법적으로 인신을 구금·처형할 수 있는 곳이고, 군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직무행위로서 타인(적)을 살상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다.

대하여 軍外의 사법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衝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겠는가. 또는 외부의 사법기관이 군인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사나 재판의 어려움은 없겠는가³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집단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법권을 운영하도록 하여 조직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다.

또한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司法 需要를 외부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경우, 오히려 군이 人權의 死角地帶로 轉落할 危險性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군지휘관을 비롯한 군구성원들이 법과 법률가 집단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부대안에서 무지에 의한 또는 고의적인 범법행위에 무감각해지거나 발생한 범법행위를 은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군부대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외부의 사법기관이 이를 감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연혁적으로도, 군사목적만을 위한 泣斬馬謖형—罰百戒형 처형으로부터 법적 절차에 따른 법률가의 적극적 관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중국적으로 근대사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잘 짜여진 強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일찍부터 군사재판제도를 갖고 있었음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³¹⁾

30) 예를 들면 군은 機動을 자주 하여 管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이 非武裝地帶안은 물론 民間人 統制線 이북지역에 주둔하고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외부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실질적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국군이 海外派兵을 시작함에 따라 군사법원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31) Water T. Cox III, The Army,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 the Evolution of Military Justice, 118 Mil. L. Rev. 1, 6. 홍창식 논문 참조

美國은 獨立되기 前, 그러므로 당연히 미국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英國의 군사법인 Articles of War를 군형사법으로 채택하여 민간법원과는 구별되는 軍法會議(Court-Martial)에 軍事裁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부여하였다. 영국의 Articles of War는 그 기원을 스웨덴의 Gustavas Adolfus와 로마 제국에 까지 거슬러 간다. 당시의 독립전쟁을 수행하면서 도입한 Articles of War는 5인 위원회(five men committee)에 의하여 운영되었는데 그 5명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George Washington(초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독립선언문 초안자 및 제3대 대통령), John Adams(2대 대통령), James Wilson, R.R. Livingston, John Rutledge 등이었다.

4. 결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 요구는, 한마디로 사법본래의 정의를 구현하고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대명제하에 軍檢察은 상관의 눈치를 봄이 없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軍事法院은 독립적으로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制度를 整備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바,

그 원인으로, 해방 후 軍事法院이 혼란스런 정국에서 郡內·外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국가질서를 유지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빈번했던 계엄령 아래서의 군사재판과 지난 50여년간의 군사법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들이 국민들의 군사재판에 대한 신뢰에 회의를 가져오게 한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민주 선진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가 겪었던 모순과 부끄러운 자화상의 한 부분으로서, ‘創造的 破壞’의 대상이 되어야지, 軍事法院의 存立 目的과 理念을 무시한 채,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듯 무조건적인 파괴를 주창하는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긴장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군사법운영례를 차지하더라도, 군 조직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군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별도의 사법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는것이며, 민간 사법기관이 이를 담당하기에는 군을 통제하는데 있어 실질적 어려움이 있고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도 비효율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軍事法院은 現實的·歷史的·比較法的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필자의 견해가 현존하는 군사법제도의 개별적 시스템을 지키려는 수구 보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한다. 필자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 조직 스스로가 軍司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總論’을 제시하는 것이지, 발제자가 제시한 군사법기구와 지휘관의 관계, 재판부 구성, 확인조치권, 영창처분의 준사법절차화 등 사법본래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各論’에 대하여 반대 또

는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오피려 필자는 軍事法院은 軍에 만기되, 군은 헌법제정권력이 맡긴 신성한 사법권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유의 司法精神에 따라 嚴正하고 獨立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사법의 衡平과 正義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발제자가 제시한 분야별 개선제안들은 군검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재 국방부 國防改革委員會가 심층 검토중에 있는 사안들로서 필자가 개별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언급을 생략한다.

다만, 잘해보자는 각종 제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제안이 지금까지 민간과 군사법기관간의 相異로 인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생소함에서 유래한 것은 아닌지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례로 軍事法院은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參審制적 성격을 띠고 있어 민간법원이 택하고 있는 법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크게 다른바, 양 제도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절대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인즉, 최근 법조계에서 법원에 參審 또는 陪審制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그 반증이라 할 것이다.³²⁾

요컨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안들을 검토함에 있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자들의 업무미숙이나 부적합 또는 부정한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잘 구분하여,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직과 인력을 잘 정비하여 기존의 제도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군생활중 모당 중진국회의원께서 자신의 변호사 생활 경험을 들면서, “軍의 司法制度가 참 좋다고 본다. 法院 檢察은 判事 檢事에게 전권을 주는 형식

32) 필자 개인적으로는 한 나라의 사법운영 시스템은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있어서 民間과 軍이 서로 大同小異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사법서비스 대상인 국민들의 불편함과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며, 민·군간의 수사 및 재판상 共助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필자도 그간 군사법운영 실무 경험과정에서 군사법의 각종절차 및 기능이 민간 검찰 또는 법원의 그것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法の 死角地帶가 발생하는 경우를 여러번 목도하였음을 밝힌다.

이어서 견제장치가 없으나, 軍은, 管轄官은 젊은 法務官의 눈치를 살피고 法務官 指揮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부정한 행동을 하기 어렵다. 法務官 조직은 상대적으로 참 깨끗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 전해 들었는바, 이는 管轄官과 軍司法運營者間의 적정한 緊張關係가 오히려 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고 본다.

지난 수년간의 兵役非理 수사과정에서도 합동수사에 참여한 서울지방검찰청의 파견검사들이 “이렇게 많은 수의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 같으면 못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는 군검찰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軍司法의 올바른 모습을 그린다는 것이, 어느 것이 좋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없는 지난한 작업임을 말해준다고 한다면 지나친 단편적 견해일까?

결국 제도도 문제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높은 價値觀과 召命意識,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성숙되고 선진화된 市民意識이 선결문제임을 밝혀 두고 싶다. 33)

33) 본고는 2003. 4. 16(수)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주최 「군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하는 자료임

군 사법제도 개선안

- 개요
- 의견수렴 결과
- 개선중점 및 방향
- 개선안
- 건의

개 요

□장관님 지침

○개선안 보고시 추가지침(4.15)

· 확인조치권 관련

-확인조치결과 검증절차 규정화 및 결과 회람

-감정기준 사례집 제작 및 활용, 군법교육 강화

· 영창제도개선 관련

-군판사에 의해 확인 심사

-6개월 미만 기결수 영창수용 폐지

· 법무장교 획득제도 및 직무보장대책 관련

-장기근무기간 구분 선발 및 선발인원 증가

-장려수당 인상(초임계급 30만원 인상)

*제도 개선시 지휘관의 지휘권확립과 조화

□추진경과

○자문회의(군내·외)2회 : '03.4.20~25

○공청회 : '03.5.14

○최종안보고 : '03.5.27 예정

○법무관리관실 이관 정책회의 및 법령 제·개정 추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 개선안 동의

- 재판에 영향력 행사금지 법제화
- 국선변호인 수사단계 지원
- 법무장교 획득 및 인사관리 개선

□ 개선안 일부 동의, 부정적 의견제시 및 답변

- 국방부 소속 순회군판사단 운용:일부동의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단급 상향
 - 수용불가, 지휘관의 군기군법 질서유지 책임과 권한 부여
- 입창절차 및 영창시설 개선:일부동의
 - *영창제도 폐지
 - 수용불가, 초급지휘관의 지휘권 확립 필요

□ 사망사고 처리 관련 요구사항(민변, 참여연대, 의문사관련단체)

- 사건발생 즉시 유선 연락, 유가족 동반 현장검증 및 공개수사, 민간병원에
서 부검 등
- 헌병수사체계 개선:차상급제대 헌병에서 수사 요구
 - *국방부 사망사고 처리지침('02.12.23)의거 대부분 이행중이나 홍보 부족
으로 지속 민원 제기
 - 국방부 훈령으로 재정비후 대국민 홍보로 민원 해소

개선 중점/방향

□ 목표

- 지휘권/장병권익이 보장되는 군 사법제도 개선

□ 중점

-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 장병권익 신장대책 강구
- 법무병과 운용 활성화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 개선방향

- 군내·외 여건 및 장병의식 변화를 감안,
지휘권 확립을 위한 법적, 지도적 뒷받침 우선 고려
- 군외부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구심 /
장병권익 보장 요구 해소
-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일부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예방책 강구
- 법무장교 인사관리 개선으로 군 사법체계의 신뢰성을 제고
- 지휘관/참모에 대한 군법교육 강화

개 선 안

- 국방부 소속『순회 군판사단』 운용
- 지휘관 확인 조치권 제한
- 재판에 영향력 행사 금지 법제화
- 국선변호인 수사단계 지원 및 업무확대
- 입창절차/영창시설 개선 추진
- 법무장교 획득제도/인사관리 개선
- 군내 사망사고 처리지침 개선

국방부 소속 『순회 군판사단』 운용

□ 개선안

○ 운용

-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 지역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순회재판
- 순회판사는 중·대령으로 보직, 재판장 임무수행
- 영장판사는 대위급으로 보직, 영장발부 및 재판지원
- 근무평정을 포함한 인사관리는 군판사단에서 실시

○ 편성

			국.고등군사법원				
			1순회재판부	2순회재판부	3순회재판부	4순회재판부	5순회재판부
순회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호남	영남
담당지역							
인 원 편 성	순회판사	17	2	5	3	3	4
	영장판사	18	1	7	4	2	4
	서기	23	2	8	5	3	5
	정병	23	2	8	5	3	5
담당법원		86	3	32	17	15	19
'02재판건수		2,729	409	976	345	429	570

□ 제 · 개정 소요

○ 군사법원법 제 · 개정

-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규정 개정(제23조 3항)
 - 임명권자: 장관 또는 각군 총장→대통령
 - 소속: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국방부
- 순회군판사단 운용 신설 제정(제23조 4항)
 -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단위로 순회군판사단을 설치

○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정 : 순회군판사단 운영(제46조)

- 순회 군판사단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 일정 지역단위로 순회군판사단을 설치
 - 순회군판사는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임명
 - 수석군판사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 후속조치

○ 인력: 현 편제인원으로 편성

- 소속 변경: 각군본부→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군판사(90명→35명), 서기/정병(각 23명)
- 각군별 편성 비율은 육2: 해1: 공1
- 계급상향 보직은 장기복무자 확보에 따라 점차 보직(중 · 대령급)

○ 시설: 5개지역 재판부, 현시설 활용(3개소) 및 신축(2개소)

- 현시설 활용(3개소): 국방부, 계룡대, 2군사령부
- 신축(2개소): 3군사령부, 1군사령부

지휘관 확인 조치권 제한

□ 개선안

- 감경사유에 대한 사유서 작성 명시 법 제정 및 절차 규정화
 - 법 제정 : 감경에 대한 사유를 명시 추가
 - 절차 : 감경사유를 서면기록, 각군 법무감실 보고
- 확인조치결과 검증절차 규정화
 - 절차 : 각군 법무감은 확인조치결과를 분석(반기 1회), 그 결과를 지휘관 회람 및 국방부 법무관리실 보고
- 확인조치 감경기준사례 제작 및 활용
 - 감경기준사례 : 범죄유형별 분류, 감경수준별로 모범사례 제시
 - 확인조치권 행사시 감경기준사례를 활용

□ 군법교육 강화

- 장교교양성 · 보수, 지휘관반 전과정에서 반복교육

장교 양성	장교 보수	지휘관반
· 현행 2학점 이상 (26시간)	· 초군/고군: 4시간 신설 · 육대전문/정규 : 현행 8/4시간	· 대대장: 2시간 신설 · 연대장: 현행 2시간 · 사단장: 1→2시간 증가

- 과정별 특성에 부합된 사례위주 교육

□ 제 · 개정 소요

- 군사법원법 개정: 확인조치에 대한 사유명시(제379조)
- 국방부훈령 제정: 감경사유 명시 및 확인조치 결과 검증절차
- 장관 지시: 군법교육 강화

□ 후속조치

- 감경기준 사례집 제작 및 활용지침 작성: 법무관리관실

재판에 영향력 행사 금지 법제화

□ 개선안

○ 재판에 영향력 행사 금지 법 제정

· 주요내용

- 재판에 관련된 인원은 재판 구성원에게 사실판단, 형 선고등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질책, 훈계, 위협 등을 할 수 없다.
- 단 범죄 예방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계획된 일반적인 지시 또는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 · 개정 소요

○ 군사법원법 제정: 재판에 영향력 행사 금지(제21조)

국선변호인 수사단계지원 및 업무확대

□ 개선안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원 법 개정

- 국선변호인 선정시기 변경
 - 피고자 → 구속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선정
- 변호인 참여 제한사항 추가
 - 구속후 48시간이후 참여
 - 증거인멸, 은닉 등 염려가 이는 경우

○국선변호장교의 소속을 각군본부로, 지휘계선에서 분리시켜 변호활동을 보장하는 규정 신설

○국선변호료 현실화로 실비 변상 및 국선변호 활성화 도모

- 민간 변호사 : 민간 법원 수준으로 증액
- 국선변호장교 : 민간 공익법무관 수준의 변호료 신설

○국선변호장교 증원

- 각군 본부 소속으로 군단급 1명씩 보직(30명)
 - ※순회군판사단 운용 개편에 따라 감소된 인원으로 보직

○도시지역 부대에 국선변호 POOL제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제 · 개정 소요

○군사법원법 개정: 국선변호인 지원시기, 변호인 참여, 국선변호장교의 소속 (제62, 233조)

□ 후속조치

○편제조정: 국선변호장교 편제 반영(군단급 1명)

입창절차/영창시설 개선추진

□ 개선안

- 징계절차에 입창시 법무장교 확인 심사 지침 제정
 - 징계입창시 법무장교 경유, 적법여부 심사 실시, 부적합시 재심사
 - 항고 절차 설명 및 서명기록 첨부
- 6개월 미만 기결수 영창에 수용하는 근거규정 삭제 및 개정
 - 3개월 이내 → 이송에 필요한 절차상 부득이한 기간에 한하여 수용
- 영창시설 개선 점차적 추진
 - 미결수, 영창자를 구분 수용
 - 장기적으로 징계자 영창시설 별도 신축

□ 제 · 개정 소요

- 군행형법 개정 : 6개월 미만 기결수 영창수용 삭제(제2조)
- 국방부 지침 : 영창처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후속조치

- 영창시설 개선 : 헌병대 신축계획에 반영추진

법무장교 획득제도/인사관리 개선

□ 개선안

○ 사시합격자에서 장·단기 구분 선발 법령 제·개정

- 장기선발인원 : 매년 20명→40명
- 장기근무기간 : 10년(5년차 전역지원 기회 부여)
 - 5년 : 소령 진급 및 해외위탁 기회부여, 소령 장려수당 인상,
 - 10년 : 중령진급 기회부여, 중령 장려수당 인상
- 선발기준/방법
 - 사시성적, 연수원 성적, TOEFL 성적, 면접실시
- 연도별 추진
 - '04년 : 사시합격자 및 현행 획득제도 병행추진
 - ※ 사시합격자에서 20명 이내 지원선발
 - '04년 : 사시합격자로 선발확대(40명)

○ 특기에 의한 전문화 인사관리 지침 제정

- 검찰/판사특기 분류, 검찰관 및 판사 상호 순환보직 통제
- 군판사는 국방부소속 순회군판사단에서 선발 및 인사관리

○ 법무장교 장기복무자 장려수당 인상

근무년수/계급	현재	인상안(증액)	복무구분	검사비교(%)
1~3년(대위)	0	30(+30)	의무복무	70%
3~5년(대위)	12	30(+18)	의무복무	73%
5~10년(소령)	18	50(+32)	1차장기복무	85%
10~15년(중령)	50	80(+20)	2차장기복무	85%
15년 이상(대령)	60	90(+30)		95%

○초임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상향조정

- 초임계급 대위 부여 필요성
 - 연수원 수료시 사무관급 대우, 초임직책 사단급 법무참모
 - 의무복무기간중 전역불가/직업성 보장, 평균연령 29~30세
 - 임시진급 폐지시 대위/소령 인력운용 부족
- 군인사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
 - 법무장교 초임계급은 중위이상 계급 부여
- 단 · 장기 구분 초임계급 차등 부여
 - 단기장교: 중위
 - 장기장교: 대위(선발시험, 군사교육기간 증가)

○임시진급 경과기간 적용 단계적 폐지지침 개정

- 임시진급을 운용인원과 경과기간 적용하여 단계적 폐지
- 군인사법의 최저복무기간 적용 시행

□ 제 · 개정 소 요

- 군인사법 개정 : 사시합격자에서 법무장교 장기지원
- 군법무장교 임용법 제정 : 장기법무장교 초임계급 대위(제3조)
- 국방부지침 : 법무장교 선발, 전문화 인사관리, 진급관리

군내 사망사고 처리지침 개선

□ 검토배경

- 군내 사망사고 처리지침(국인군.02.12.23)에 의거 실무부대에서 이행중이나 홍보부족으로 지속 문제제기
- 사망사고에 대한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대군 불신요인으로 작용, 근본대책 강구 필요

□ 개선안

- 군내 사망사고 처리지침을, 국방부 훈령으로 개선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추진
 - 주요보완내용
 - 사건발생시 즉시 유선연락, 유가족 도착시까지 현장보존
 - 유가족 동반 현장검증 및 공개수사
 - 유가족 섭외 부검의에 대한 부검 인정
 - 부검시 유가족 대표 필히 참석 등
- 헌병수사체계 대선
 - 주요사건은 차상급 헌병대 수사관할로 상향 조정(국방부 지침)
 - 차상급 헌병대 수사 완료후 해당부대 검찰부대 검찰부 송치, 해당부대 지휘권 보장

향후추진 및 후속조치

□ 법령 제 · 개정(총15건)

□ 후속조치

- 정책회의: 법무관리관실
- 법령개정: 법무관리관실
- 법무장교 획득 및 인사관리: 인사복지국
- 조직개편: 법무관리관실, 기획조정관실
- 사망사고 처리지침 제정: 인사복지국

고등군사법원 연감

(2000. 7. 1 ~ 2002. 12. 31)

인쇄일: 2003년 10월 15일

발행일: 2003년 10월 20일

편 집: 고등군사법원 행정처

발행처: 고 등 군 사 법 원

기획·인쇄: 민후아트 (2268-6716)

